

**김해 장유복합문화센터 조감도**

## 목 차

<b>■ 건설관련 소식 ..... 1</b>	<b>■ 지식정보 ..... 14</b>
-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발전 연찬회 개최	- "민간 개발 산업단지, 착공 후 선분양 가능"
- 경상도, 국토교통부 주관 도로정비평가 우수 기관에 선정	-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 공식 출범"
- 경상도, 내년도 국고예산 확보 역대 최대 성과	- 국토부, 싱크홀 예방을 위한 지반침하 예방 대책 발표
- 고성·창녕군 개발촉진지구 지정 7개 사업 1,898억 원 투자	- 16일 냉정~부산 3개 구간 고속도로 개통
- 창원 동읍 덕천교차로 개선공사 내년 착공	- 광역시·도 지방공사도 '토지보상 업무'수탁 가능
- 창원~현풍간 고속국도 '대합 IC' 예산 확정	- 실적공사비 제도 전면 손질한다
- 창원터널 장유구간 염수살포장치로 교통정체 해소에 크게 기여	- 국토부,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 발표
- 경상도 3대 국가산업단지 개발 확정	- 국토부, 지자체 숨은 건축규제 발본색원한다
- 창원국가산단 산학융합지구 유치 확정	-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마련
- 경상도, 행정자치부·국토교통부 주관 도로분야 평가 "우수"	- 신축 공동주택, 에너지 의무절감률 40%로 강화
- '건설업 과태료 저감대책'적극 추진	- 해안, 도서지역도 GPS를 이용하여 땅 높이를 쉽게 측량 가능
- 경상도, 2015년도 재해예방사업 조기추진단 구성·운영	<b>■ 최신법령 및 법령해석 ..... 31</b>
- 경상도, 재해위험 급경사지 안정성 검토용역 실시	<b>■ 신기술 정보 ..... 36</b>
- 경상도, 2015년도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계획 수립	<b>■ 건설기술심의 및 계약심사 현황 ..... 44</b>
	<b>■ 기술인 나눔 정보 ..... 45</b>

###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발전 연찬회 개최

- ▶ 12일 창원 풀만호텔, 관계자 200명 참석  
유공자 표창
- ▶ 홍준표 도지사, “도민의 안전은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데서 시작”



《 자랑스러운 건설인상 수상자 》

경남도는 12월 12일 오전 10시 창원 풀만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지역건설산업 발전 연찬회’가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연찬회에는 건설산업 정책과 동향을 공유하고 도내 건설사들의 사기진작 및 자금심 고취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홍준표 도지사, 여환부 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장을 비롯하여 도 및 시·군 건설담당 공무원, 건설사, 건설관련 협회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연찬회는 지역업체 하도급 확대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건설 산업 발전에 기여한 회사 8개사와 개인 부문 2명에게 ‘2014년도 경상남도 자랑스러운 건설인상’을 시상하고, 홍준표 도지사의 인사말씀, 정해남 경남도 건설지원과장의 ‘2015년도 건설 관련 주요시책’ 설명, 건설산업 연구원 이홍일 박사의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건설사 대응전략’, 박용석 박사의 ‘지역인프라 실태와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과제’ 특강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올해 경상남도 자랑스러운 건설인상은 기업 부문에 한남종합건설(주)(대표 송한영) 등 8개사, 개인 부문에 (주)웅산건설 대표 옥정우, 현대산업개발(주) 김동연 직원 2명에게 수여되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홍준표 도지사는 “도민의 안전은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며, “기본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투명한 사회와 깨끗한 도정 운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한 경남, 깨끗한 경남을 위해 건설인과 도민 모두가 다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자료 : 도 건설지원과 건설지원팀당  
(055)211-4613



### 경남도, 국토교통부 주관 도로정비평가 우수기관에 선정

- ▶ 기관표창 수상 및 우수기관 지원금 7천만원 받아

경남도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도로정비평가에서 2012년 이래 3년 연속으로 우수기관에 선정되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도가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 도내 위임국도 374km를 비롯해 지방도 2,160km, 시군도 6,074km에 대하여 재포장 및 포장도 보수 11,676a, 교량·구조물 정비 280개소, 배수로정비 145개소, 차선 도색 2,000km, 노면정비, 안전시설, 월동장비 등을 정비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에 도내를 찾는 관광객 및 도로 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아 지방도 부문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내년 1월 국토교통부장관의 기관표창과 함께 우수기관 지원금 7천만 원도 받는다.

도로정비는 매년 여름철 호우 등으로 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시설물 정비, 겨울철 강설에 대비해 제설자재 및 장비 점검, 교통사고 위험요인 사전제거 등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도로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매년 춘·추계로 나누어 시행되고 있다.

이용재 경남도 도로과장은 “경남도가 2012년부터 이번까지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된 것은 도와 시군이 도로정비를 위해 유기적이고 긴밀하게 협조한 결과”라며, “내년에도 우수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연초부터 각종 도로시설물에 대한 정비 및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도내 시군별로 도로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10월 말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미비사항에 대하여는 재정비 및 현장 시정조치 등 처분을 하고 평가결과 정비실적이 우수한 거제시, 창원군 등 7개 시군에 기관표창과 함께 유공자에게 연말에 도지사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 자료 : 도 도로과 도로시설담당  
(055)211-4674



## 경남도, 내년도 국고예산 확보 역대 최대 성과

- ▶ 올해보다 10.1%(3,541억 원) 증가한 3조 8,427억 원 확보
- ▶ 지난 5년간 평균(4.7%)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사상 최대 규모 국비 확보

2015년도 정부 예산이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국회에서 확정된 2015년도 정부예산 중 경남도의 국고예산 반영액은 총 663건 3조 8,427억 원(국고보조사업 511건 3조 562억 원, 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 152건 7,865억 원)으로 2014년도 국고 확보액 3조 4,886억 원보다 3,541억 원(10.1%)이 증가한 사상 최대 규모이다.

이는 내년도 정부예산 증가율 5.0%에 비해 두 배 이상 확보한 높은 실적이다.

또한, 정부에서 직접 우리 도에 추진하는 국가시행사업은 80건에 2조 4,409억 원이 반영되어 지난해 2조 2,889억 원보다 1,520억 원(6.6%)이 증가되었다.

이 같은 큰 성과는 홍준표 도지사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 및 중앙부처와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국고예산확보를 위해 국회의원과 우리도 실국본부장으로 구성된 T/F팀을 진두 지휘한 조해진 새누리당 도당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원회 운영석 의원이 예산 반영 첨병 역할을 하였으며 박성호, 김성찬, 민홍철 예결위원과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예산안 심의과정부터 의결까지 경남의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국비확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결과이다.

특히, 경남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대합 IC 신설 설계비 및 공사비 22억 5천만 원을 확보함에 따라 창녕대합1·2차 일반산업단지 및 넥센 일반산업단지에 생산되는 수송 차량들이 대합IC를 이용함으로써 7~8km의 지방도를 우회하여 고속국도에 진입하는 물류비용, 도로파손, 교통사고 위험 등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예산에 반영된 경남도의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 국고보조사업은

- ▷ 보육 돌봄 서비스 사업 343억 원
- ▷ 영유아 보육료 2,365억 원
- ▷ 가정 양육 수당 801억 원
- ▷ 장애인 연금 388억 원
- ▷ 기초연금 지급 6,106억 원
- ▷ 의료 급여사업 3,826억 원
- ▷ 생계급여 1,799억 원
- ▷ 국가예방접종 123억 원
- ▷ 거제 해양플랜트 산업지원센터 구축 97억 원
- ▷ 도시철도 양산선(노포~북정) 건설 60억 원
- ▷ 마산 로봇랜드 조성 77억 원
- ▷ 산학 융합지구 조성 30억 원
- ▷ 향노화산업 산학 융복합 센터 구축 31억 원
- ▷ 배수개선 281억 원
- ▷ 연안어선 감척 지원 45억 원
- ▷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432억 원
- ▷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134억 원
- ▷ 하수관거 정비 761억 원
- ▷ 도심침수 대응 396억 원
- ▷ 하수처리장 확충 133억 원
- ▷ 숲 가꾸기사업 261억 원
- ▷ 산림병해충 방제 198억 원
- ▷ 재해위험지구 정비 427억 원
- ▷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578억 원
- ▷ 생태하천 조성사업 200억 원
- ▷ 고향의강 조성사업 771억 원
- ▷ 문화재 보수정비(국가지정문화재) 600억 원

▷ 마산의료원 및 장례식장 신축 183억 원 등이 반영되었다.

⇒ 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은

- ▷ 로봇 비즈니스벨트 조성 50억 원
- ▷ 국가지원지방도(12개소) 건설 1,104억 원
- ▷ 지역특화산업 육성 131억 원
- ▷ 석동~소사간 도로 개설 110억 원
- ▷ 갈사만 도로(1,2,4,내부간선)개설 71억 원
- ▷ 갈사조선산단, 대송산단 내부간선도로 개설 120억 원
- ▷ 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등 265억 원
- ▷ 창원 컨벤션센터 증축 123억 원
- ▷ 상수도 시설 확충 및 관리 491억 원
- ▷ 지방어항 건설 98억 원
-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33억 원
- ▷ 사회적 기업 육성 44억 원
- ▷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14억 원
- ▷ 지역전략 식품산업 육성 31억 원
- ▷ 생태하천 복원사업 279억 원
- ▷ 소하천 정비 사업 234억 원
- ▷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 156억 원 등이 반영되었다.

국가에서 직접 우리도내에 시행하는 국가시행 주요사업으로

- ▷ 창녕~현풍 고속국도 확장(대합IC설치 설계비 포함) 22.5억 원
- ▷ 함양~울산간 고속국도 건설 2,950억 원
- ▷ 88올림픽 고속국도 건설 3,890억 원
- ▷ 김해~부산외곽 순환고속국도 건설 5,250억 원
- ▷ 제2안민터널(국대도5호선) 건설 10억 원
- ▷ 웅동~장유(국도58호선) 건설 179억 원
- ▷ 마산자유무역지역 노후표준공장 재건축 167억 원
- ▷ 수리시설 개보수 550억 원
- ▷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510억 원
- ▷ 마산항, 부산항 건설 1,467억 원
- ▷ 진주~광양 복선·부전~마산 복전철화 2,160억 원



- ▶ 부산항 신항 배후도로건설 1,000억 원
- ▶ 거제~마산2,3(국도5호선) 건설 528억 원
- ▶ 동읍~한림(국도14호선) 건설 240억 원
- ▶ 고현~하동IC1,2,3(국도19호선) 건설 502억 원
- ▶ 생비량~쌍백(국도20호선) 건설 195억 원
- ▶ 부산시계~웅상1,2(국도7호선) 건설 814억 원
- ▶ 하동~화계(국도19호선) 건설 200억 원
- ▶ 웅상~무거(국도7호선) 건설 244억 원
- ▶ 귀곡~행암(국대도2호선) 건설 184억 원
- ▶ 국가하천정비(11개소) 381억 원 등이다.

특히, 정부의 복지에산증가에 따라 신규 SOC 사업 예산을 축소한다는 기조에도 불구하고

- ▶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 사업비 50억 원 확보는 로봇산업이 경남산업 전반에 대한 파급효과와 국가 로봇산업 발전전략과 연계하여 특수제조환경 로봇기술개발을 통한 국가제조 경쟁력 강화 및 로봇 신시장을 창출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연구개발 및 기반을 구축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 재해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의식 함양 교육을 실시하고,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안전관련 사업에 685억 원을 확보하였다.
- ▶ 적조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조 구제사업, 가두리 어장시설현대화, 적조 우심해역 품종변경 지원 등에 45억 원을 확보하였다.

계속사업으로

- ▶ 88올림픽 고속도로 확장사업도 3,890억 원 확보하여 2015년도 완공 예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 중이며, 함양~울산 간 고속국도 건설에 2,950억 원, 진주~광양 및 부전~마산 전철 복선화 사업에 2,160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물류수송 및 남해안 관광산업 활성화 기여 할 것으로 전망된다.

- ▶ 또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도로개설사업에 110억 원, 갈사만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에 192억 원, 김해~부산 간 외곽순환 고속국도 건설 5,250억 원, 신항 제2 배후도로 건설에 1,000억 원, 국도 및 국가대체우회도로 건설에 5,182억 원, 국가하천 정비사업에 381억 원을 확보하는 등 SOC사업에도 많은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남도는 이번 국고예산 확보를 바탕으로 경남 미래 50년을 향해 전 시군이 신성장동력 육성에 주력하고, 선도적인 정책발굴을 통해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 자료 : 도 예산담당관실 재정지원담당  
(055)211-2372



## 고성·창녕군 개발촉진지구 지정 7개 사업 1,898억 원 투자

- ▶ 생산기반·관광휴양산업 육성 등으로 지역 주민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 기대

경남도는 경남 고성군 일대 1.23km<sup>2</sup>, 4개 사업 430억 원, 창녕군 일대 지정면적 4.37km<sup>2</sup>, 3개 사업 1,468억 원을 투자계획으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고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고시한 고성·창녕 개발촉진지구는 해당 군에서 개발촉진지구 및 개발계획(안)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에 승인·신청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관계부처 협의와 실현가능성 현장 검증,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 것이다.

개발촉진지구는 낙후된 지역에 소득기반 조성 및 생활환경 개선 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25개 법률에 의한 각종 인·허가 처리와 토지수용권 등 행정지원을 비롯해 사업시행자·지구 내 중소기업에 대한 취득·등록세 면제, 소득·법인·재산세를 감면하는 조세지원도 제공되고, 연결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한 정부지원이 이루어진다.

고성군은 2020년까지 당항포관광지 진입도로 확장공사 등 기반시설사업과 발전설비 홍보관을 조성하는 지역특화사업 등 4개 사업에 국비 230억 원, 민자 200억 원이 투자한다.

또 창녕군은 2019년까지 대합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과 산업자원을 활용한 일반산업단지 및 미니복합타운을 조성하는 소득증대사업 등 3개 사업에 국비 213억 원, 민자 1,255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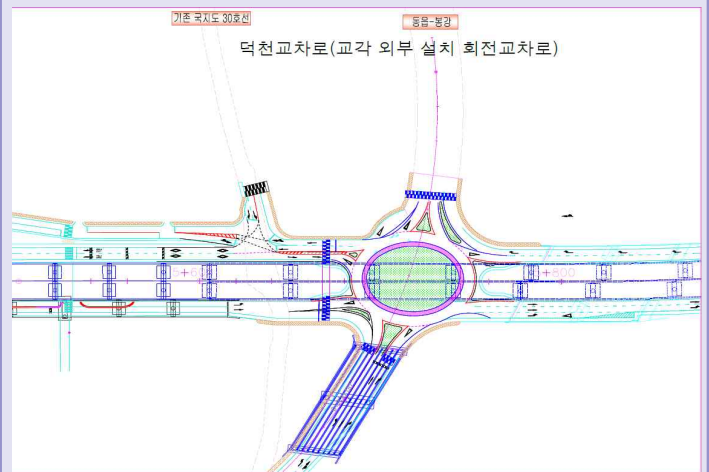
경남도는 이번 고성·창녕 개발촉진지구 지정으로 경남도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되며, 주민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자료 : 도 항공우주산업과 지역개발담당 (055)211-6444

## 창원 동읍 덕천교차로 개선공사 내년 착공

▶ 국가지원지방도 30호선 덕천교차로 사고위험 개선 위해 회전교차로 설치

경남도가 창원시 동읍 용잠리일원 국도 14호선과 국가지원지방도 30호선이 연결되는 덕천교차로 개선공사를 내년도 3억원 예산으로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덕천교차로 개선공사(회전교차로 설치) 계획(안)》

덕천교차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한 국도 14호선 동읍우회도로와 경남도에서 시행하는 국가지원지방도 30호선 동읍~봉강간 도로건설공사와의 교차지점으로, 교차로 진입로의 회전반경이 작고, 같은 방향의 3차로 중간에 반대 방향 차로가 위치하고 있어, 대형차량의 통행불편 및 야간 운전자나, 강우시 운전자의 혼란을 초래하여, 역주행 등으로 교통사고 발생우려가 매우 높은 곳이다.

이에 도의원과 시의원, 지역 주민들로부터 교차로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요구가 있어 왔다.

그러나, 경남도에서 공사 시행 중인 국가지원지방도 30호선이 덕천교차로에 연결되면 통행불편 및 교통사고 위험이 근본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시점부 공사를 위해서는 편입토지 보상 및 문화재 시·발굴조사,

연약지반 개량 등 도로개통 시까지 최소 3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어 장기간 주민불편이 가중될 것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경남도에서는 경찰청 및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합동회의를 통해 통행불편 해소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올해 결산추경에 사업비 3억 원을 확보했다.

도는 내년 상반기까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덕천교차로 시설물 인계·인수 및 회전교차로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개선공사를 착공하여 연내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용재 도로과장은 “덕천교차로 개선공사가 완료되면 그동안 복잡한 구조의 교차로 형태로 인한 통행불편 및 교통사고 위험이 현저히 감소하게 되어 인근 지역주민 및 도로이용자들의 편의제공 및 안전한 보행환경 제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자료 : 도 도로과 도로계획담당  
(055)211-4664



## 창녕~현풍간 고속국도 '대합 IC' 예산 확정

### ▶ 내년도 정부예산 22.5억 원 확보

경남도가 '경남 미래 50년 발전전략'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부내륙고속국도 창녕~현풍간 도로구간 내 대합IC설치가 경남도의 적극적인 국비예산 확보 노력으로 내년도 실시설계비 5억 원을 포함하여 22.5억 원이 확정 반영되었다고 3일 밝혔다.

경남도는 광역자치단체 중 4번째로 큰 규모이지만 도로 등 사회 인프라 정비는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교통망 구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거점 항구나 산업단지로의 물류수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관광자원 활성화에도 걸림돌로 작용하는 등 교통인프라 확충이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매우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도로포장을 : 전국 82.5%, 경남 71.4%)

이에 경남도는 내년도 경남지역 SOC사업 국비예산 확보를 위하여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국회,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한국도로공사 등 관련 기관을 수차례 방문하여 창녕~현풍 고속국도 6차로 확장(대합IC 설치), 함양~울산 간 고속국도 건설, 거제~마산 간(국도5호선) 도로건설, 웅동~장유 간(국도58호선) 도로건설 등 지역 현안사업 국비 지원을 건의한 결과, 도로분야에 전년 대비 7.4% 증액된 총 1조 9,889억 원의 정부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중앙정부에 창녕~현풍 고속국도 대합IC 설치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지역여건, 개발계획, 교통량 변화추이 등 관련

자료를 상세히 작성하여 설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설명한 결과, 내년도 대합IC 실시설계비 5억 원을 포함하여 사업비 22.5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창녕~현풍 간 고속국도는 경남 창녕군 창녕 IC ~ 대구 달성군 현풍JCT 구간 15.5km를 현행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고, 중간지점에 대합IC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지역주민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요구가 많았던 지역 현안사업이다.

창녕~현풍 고속국도 확장 및 대합IC 설치 사업은 총사업비 1,208억 원이 투입되며, 2015년 착공하여 2020년 완공예정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대합IC 주변에 위치한 대합1·2차 일반산업단지, 넥센일반산업단지, 대합농공단지 등 입주기업들의 물류비용이 절감되고 기업의 신규투자가 이어져 경남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경남 미래 50년 발전전략'의 조기실현은 물론 국토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우포늪과 연계한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자료 : 도 도로과 도로계획팀  
(055)211-4663



## 창원터널 장유구간 염수살포장치로 교통정체해소에 크게 기여

▶ 2014년 재난관리기금으로 염수살포장치 설치, 강설시 자동적으로 제설 효과

경남도는 12월 8일 갑작스런 폭설로 도내 평균 3.1cm의 눈이 내려 경남도와 시군에서는 제설장비 188대, 염화칼슘 296톤, 모래 785m<sup>3</sup>, 공무원 등 1,200여 명이 비상근무 하여 교통체증 해소에 최선을 다하였고, 거창 함양·산청 등 눈이 많이 내린 11개 노선 40km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통제를 실시했다.

특히, 경남도는 2014년 재난관리기금으로 설치한 창원터널 장유구간 염수살포장치 가동으로 이번 폭설 시 만성정체구간인 창원터널 장유구간 교통체증에 해소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밝혔다.

겨울철 대설 시 상시 교통대란을 겪고 있는 창원터널(창원터널입구 ~ 대청IC 구간, 2.0km)에 염수살포장치를 오전 5시부터 조기 가동으로 이번 교통해소에 큰 도움이 되었다.

염수살포장치는 고체인 염화칼슘을 물에 녹여 액상화 하여 탱크에(300톤) 저장하여 원하는 시간대로 자동살포로 제설하는 장치로서 기존 인력을 통한 제설작업 보다 효과적이다.

경남도에서는 앞으로도 폭설 시 취약구간에는 염수살포장치 추가설치와 자동염수분사차량 추가 확보로 강설 초기단계 대응으로 교통불편 해소에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폭설로 내 집 앞 제설작업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 자료 : 도 안전총괄과 자연재해팀  
(055)211-4545





## 경남도 3대 국가산업단지 개발 확정 - 항공·나노융합·해양플랜트 -

▶ 홍준표 도지사 공약, 경남미래 50년 핵심 전략산업 탄력



경남도는 12월 17일 경남도가 그 동안 전력을 다해 추진해 온 항공 산단, 나노융합 산단 2곳이 국가산업단지로 확정되고 거제 해양플랜트 산단은 법인 설립 후 국가산단으로 개발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74년 ‘거제 죽도 국가산업단지’와 ‘창원 국가산업단지’가 지정된 지 40여년 만에 경남에 국가산업단지가 추진되는 것이다.

이번 발표는 같은 날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조정실장, 국토부·산업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토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지난 3월 12일 제5차 무역투자회의 때 보고한 ‘국가지원 지역 특화산업 입지지원 방안’을 확정된 내용이다.

‘국가지원 지역 특화산업 입지지원 방안’에는

진주·사천 항공산단과 밀양 나노융합산단을 각각 165만㎡ 규모로 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여 우선적으로 국가산단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거제 해양플랜트 산단은 국가산단으로 개발하되 특수목적 법인을 구성한 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번 국가산단 개발 발표는 홍준표 도지사가 공약으로 채택한 지 2년만의 쾌거로 도정 공약 사업을 조기에 이행함으로써 경남 미래 50년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항공 국가산단과 나노융합 국가산단은 ‘산업단지 인허가 특례법’을 적용해 지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2016년에 사업을 착수하고, 추가 수요에 따라 산단 규모를 단계별로 확대 지정 조성하기로 LH와 협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경남도가 당초에 계획했던 규모로 산단이 조성될 계획이며, 해양플랜트 산단은 2015년 상반기에 특수목적법인 설립 후 국가산단으로 개발하게 된다.

항공·나노융합·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이 계획대로 조성되면 26조 9,234억원의 경제 유발효과와 9만 7천여명의 고용 유발효과가 기대된다.

구분	경제 유발효과(억원)	고용 유발효과(명)
계	269,234	97,441
항공	202,519	58,255
나노융합	47,079	28,570
해양플랜트	19,636	10,616

그동안 경남도는 이번 국가산단 지정과 산업육성을 위하여 전문가, 교수, 관련 기업 CEO 등으로 구성된 「창조산업 육성 추진위원회」와 산업별 육성지원단을 운영하여 산단 산업입지

수요의 정부 정책 반영을 위한 자문 기구로 적극 활용하였으며, 입주수요 확보를 위해 2013년 9월부터 「산단 투자유치 TF팀」을 가동하여 도내 앵커기업은 물론 부산, 대구 등 전국 관련 기업을 방문하는 등 활발한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해 왔다.

아울러 경남도는 국가산단 입주 예정인 KAI, 한국카본을 비롯한 30개 기업과 상호협력력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하여 기업의 공장 건립과 기업 활동을 위한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또한 항공·나노융합·해양플랜트 산업을 경남 미래 50년을 이끌어갈 핵심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항공우주산업과, 기계나노융합과, 조선해양플랜트과 등 각 산업별로 조직을 개편하여 국회, 국토부, 산업부, LH 등을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전략적으로 국가산단 지정의 당위성을 집중 건의해 왔다.

그 결과 산업부로부터 사천임대산단과 종포일반산단이 항공산업 특화단지 지정받아 국비 400억 원이 투입되어 2018년까지 물류센터 확충사업 등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나노융합 국가산단에는 한전이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한전 자재센터 건립 등을 약속하는 등 정부 차원의 국가산단 지원 정책을 이끌어냈다.

홍준표 경상남도지사는 “경남도가 추진해온 항공, 나노융합, 해양플랜트산업단지가 모두 국가산업단지로 개발되게 된 것은 경남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는 것은 물론 경남 미래 50년 핵심산업 추진의 초석을 마련한 것”이라며 “성공적인 국가산단 조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기업들을 적극 유치하여 경남의 창조산업을 통해 국가경제를 선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자료**

- 항공산업산단 : 항공우주산업과 문정열(O55)211-6413
- 나노융합산단 : 기계나노융합과 홍연환(O55)211-2723
- 해양플랜트산단 : 조선해양플랜트과 김영애(O55)211-2753



**창원국가산단 산학융합지구 유치 확정**

**▶ 창원국가산단 구조고도화와 혁신 탄력 받아**

경남도는 경남 미래 50년 성장동력사업으로 추진 중인 3개 국가산업단지 개발 확정에 이어 창원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핵심사업으로 추진해 온 경남창원산학융합지구(창원 팔용동 종합버스터미널 옆)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은 산업단지와 대학을 공간적으로 통합하고, 현장 중심의 산학융합형 교육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R&D-인력양성-고용이 선순환 하는 사업으로서 창원국가산단 구조고도화사업의 핵심사업으로 내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국비 120억 원과 지방비 70억 원(경남도 35억 원, 창원시 35억 원), 한국산업단지 관리공단 60억 원 등 총 300억 원을 투입해 산학캠퍼스관과 기업연구관을 신축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지난 10월 경남창원산학융합본부(경남도·창원시·산단공·경상대·경남대·마산대)는 산업 통상자원부의 2014년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전국 공모에 신청해 발표평가 및 두 차례의 현장평가를 받았다.

도는 그동안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선정 평가위원회와 심의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치열한 경합을 벌여왔는데 경남도를 비롯한 참여기관은 올해 1월부터 사업유치를 위한 실무위원회 구성 및 사업계획서 작성

T/F팀을 가동하여 체계적인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수시로 협의하고 참여기업 유치활동을 하면서 사업준비에 만전을 기한 결과 전국적으로 여덟 번째 산학융합지구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게 되었다.

\* 기존 산학융합지구(7개) : 2011-반월시화, 구미, 군산 새만금, 2012-울산, 대불산단, 오송, 2013-당진

**<경남 창원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개요>**

- 위치 :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40-5, 6번지 (물류센터 부지)
- 사업기간 : 2014. 12. 1 ~ 2019. 6. 30(55개월)
- 사업비 : 300억원 (국 120, 도 35, 시 35, 산단공 60, 대학 50)
- 사업내용
  - 산업단지캠퍼스 : 6,700㎡(지하 1층, 지상 7층), 6개 학과, 335명
  - 기업연구관 : 7,260㎡(지하 1층, 지상 7층), 56개 업체, 인력 250명
  - 근로자 평생학습프로그램, R&D연계 현장맞춤형 교육, 중소기업 역량 강화 등

하승철 경남도 경제통상본부장은 “노후화된 창원국가산단이 지난해 11월 구조고도화 확산단지, 올해 3월 혁신산단으로 지정된 이후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선정으로 창원국가산단이 새롭게 변모하는 첫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참여기관 상호 간 협력을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과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자료 : 도 기계-노동융합과 과학기술담당 (055)211-2734



**경남도, 행정자치부·국토교통부 주관 도로분야 평가 “우수”**

▶ 위험도로구조개선 및 도로정비평가 분야 우수기관 선정

경남도는 행정자치부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14년도 도로분야 평가에서 각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24일 밝혔다.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지방도로정비사업 성과 점검평가’에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분야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자치부장관의 기관표창과 유공공무원은 국무총리 표창을 수여하게 되었다.

이번 평가는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18일까지 전국 16개 시도, 77개 시군구의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현장 점검과 서면 점검이 이루어졌다.

이번 지방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점검에서는 경남도가 광역자치단체 평가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의령군이 최우수, 거창군이 장려로 선정되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도로정비평가에서는 경남도가 2012년 우수, 지난해 우수에 이어 올해에도 우수기관으로 3년 연속 선정되었다.

이는 경남도가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 도내 위임국도 374km를 비롯해 지방도 2,160km, 시군도 6,074km에 대하여 재포장 및 포장도 보수 11,676a, 교량·구조물 정비 280개소, 배수로정비 145개소, 차선 도색 2,000km, 노건정비, 안전시설, 월동장비 등을 정비하였다.

이에 도내를 찾는 관광객 및 도로 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아 지방도 부문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내년 1월 국토교통부장관의 기관표창과 함께 우수기관 상사업비 7천만 원도 받는다.

올해 경남도는 위험도로 구조개선 14개소에 43억 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12개소에 7억 원, 회전교차로 5개소에 14억 원,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 1개소에 20억 원, 어린이보호구역개선 29개소에 15억 원을 투자하여 불합리한 도로구조를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했다.

이용재 경상남도 도로과장은 “경남도가 도로 관련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된 것은 도와 시군이 유기적이고 긴밀하게 협조한 결과”라며, “내년에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종 도로시설물 정비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자료 : 도 도로과 도로시설담당 (055)211-2675



### ‘건설업 과태료 저감대책’ 적극 추진

▶ 건설사 재정부담 경감과 행정력 절감으로 일석이조 효과

경남도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라 최근 몇 년간 과태료 부과액의 지속적인 증가로 중·소 건설사의 재정부담 경감 및 법령 위반 통보에 의한 징벌적 행정보다는 예방행정을 위하여 「건설업 과태료 저감 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2011년 이후 최근 3년간 과태료 부과건수와 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미통보 (156건), 기재사항 변경지연 (81건), 하도급계약 미통보(30건) 등이 주요사유이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1개 건설사에서 동일항목으로 여러 건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1회에 5백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처분 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 ※ 과태료 부과현황

(단위 : 백만원)

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11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485	228	19	9	81	24	191	82	194	113

건설사의 행정전담 직원 미확보, 의무 사항 미인지, 업무 부주의 등이 과태료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건설사가 각종 준수사항에 대하여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과태료 처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징벌적 행정에서 예방행정으로 전환하는 과태료 저감 대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2월에 최근 3년간 신규 등록사와 건설협회 비회원사를 조사 후 안내문을 작성하여, 2015년 1월에 신규 등록사와 건설협회 비회원사(300여개사) 위주로 배부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회원사에 대하여는 건설협회를 적극 활용하고 전문건설업을 관리하는 시·군에도 건설사 준수사항을 적극 홍보하도록 통보하고 신규등록 및 도급계약 체결시에도 안내문을 배부하여 건설업 과태료를 저감함으로써 건설사는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경남도와 시·군에서는 과태료 부과·미수납 관리에 따른 행정력을 절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 자료 : 도 건설지원과 건설지원담당 (055)211-4613

## 경남도, 2015년도 재해예방사업 조기추진단 구성·운영

▶ 재해예방사업 2월말 90% 발주, 6월말 60% 이상 완공 계획

경남도는 2015년도 재해예방사업을 여름철 우기 전까지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한 재해예방사업 조기추진단을 구성·운영하여 내년 2월말 까지 90%이상을 발주하고 6월말 까지 60%이상을 완공하여 재해취약요소를 사전에 해소하기로 하였다.

재해예방사업 조기추진단은 안전건설국장을 단장으로 3개반 14명으로 구성·운영하며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설계 및 보상, 공사발주 및 착공, 시공관리 실태 등에 대하여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 시 대책을 수립한다.

사업 조기발주에 지장이 없도록 2015년 1월 말까지 예산편성 및 행정절차를 사전 준비하고, 2월 말까지 공사발주 및 보상추진하여 11월 말까지 공사를 추진하되 가능한 6월 말까지 60%이상 완공할 계획이며, 매월 사업장별로 공정계획을 제출받아 추진상황을 분석하고 부진사업지구에 대해서는 공정만회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재해예방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하여 안전건설국장 주재로 12월 23일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시·군 담당과장 회의를 개최하여 세부 추진일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시·군 자체 조기추진단을 구성·운영해 적극 추진하도록 하였다.

2015년도 재해예방사업은 2014년도 사업비 1,470억원보다 11%가 증가한 총 127개 지구에 1,630억원을 투입하여 재해위험지구 정비 704억원, 위험저수지정비 59억원, 서민밀집위험지역정비 85억원,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정비 241억원, 소하천정비 541억원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 자료 : 도 안전총괄과 자연재해팀담당  
(055)211-4543

## 경남도, 재해위험 급경사지 안정성 검토용역 실시

▶ D·E등급 119개소 중 미 개선지구 74개소

경남도는 국민안전처로부터 국비 555백만 원을 지원받아 급경사지 D·E등급 119개소 중 개선완료지구 45개소를 제외한 미 개선지구 74개소에 대하여 재해위험 급경사지 안정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최근 세월호 사고,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 등 우리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난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 불감증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시행하는 안전성 검토 용역이다.

급경사지는 A~E등급으로 구분하는데 그 중 A~C등급은 붕괴위험이 미미하고 D~E등급은 붕괴위험이 높은 지구로, 현재 경남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급경사지는 총 3,091개소이며, 이 중 붕괴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C등급 500개소와 D·E등급 119개소 등 619개소에 대하여 년차별 정비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특히, 재해위험등급이 높은 D·E등급에 대해 재해위험 급경사지 안정성 검토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향후 안정성 검토용역 결과에 따라 D·E등급의 재해위험요소는 중점적으로 보수·보강하여 조기에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경남도에서는 재해는 예방이 우선이라는 목표설정으로 2014년 급경사지붕괴위험정비사업 12개 지구에 107억원 뿐만 아니라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33개지구 734억원,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 13개 지구 105억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4개 지구 33억원, 소하천정비사업 45개지구 491억원 등 총 106개지구 1,470억원을 확보하여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에도 전년보다 11% 증액된 1,630억원을 확보하여 급경사지 및 재해위험지구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경남도 안전건설국장은 “ 지속적인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을 통해 붕괴와 재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정비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다. ” 라고 밝혔다.

■ 자료 : 도 안전총괄과 재해담당 (055)211-4543



## 경남도, 2015년도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계획 수립

▶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를 통해 점검대상 8,256개소 확정

경남도는 「2015년도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난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도내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시설 8,256개소(중점관리대상시설 8,244개소, 재난위험시설 12개소)를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월별, 계절별, 요인별 중점 지도 점검 및 정기·수시점검을 병행 실시하고 점검결과 위험요인은 추적관리토록 할 예정이며 재난위험시설(D급)은 장·단기 해소 대책을 마련하고 대상시설 12개소 중 10개소를

보강하거나 철거해 해소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시·군 담당공무원과 도민을 대상으로 개정법령 및 시설물안전점검 교육을 분기 1회 실시하고 다양한 언론 및 방송 매체를 통해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도민의 안전의식 제고에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다.

경남도는 올해 취약시기별 안전점검을 통해 특정관리대상시설 836개소(설명절 대비 69개소, 해빙기 대비 187개소, 행락철 대비 144개소, 우수기 대비 64개소, 휴가철 대비 123개소, 가을철 대비 121개소, 동절기 대비 118개소, 민·관 합동점검 10개소)를 점검하여 1,424건에 대해 보완 및 시정조치 하였으며 특히, 도내 재난위험시설(D,E급) 34개소는 보수·보강 및 철거해 해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경남도 안전건설국장은 “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해 취약시기별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전 안전조치를 강구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경남실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자료 : 도 안전총괄과 안전관리담당 (055)211-4525

### “민간 개발 산업단지, 착공 후 선분양 가능”

#### ▶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 완화...기업의 산업 개발 부담 낮아져

기업들이 산업단지 개발을 할 때 선 분양 요건을 완화하여 자금 부담이 낮아지고,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를 완화하여 수익성이 높아짐으로써 민간의 산업단지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와 같은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이 12월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개발계획에서 업종 배치계획 생략 등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손톱 밑 가시 과제” 등 경제단체, 지자체 등에서 지속 건의해오던 내용을 적극 수용한 것들이 포함되었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민간 사업자의 선 분양 요건 완화

민간이 개발하는 산업단지에 대한 선(先) 공급기준\*에서 “공사 진척률 10% 이상” 조건을 “공사 착수”로 완화하여, 산업단지 용지도 주택용지처럼 착공 후 바로 선분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용지 조성공사 완료 이전에 공급 대상자 선정 → 일부 용지대금 선(先) 수령

- 요건: ① 해당 토지 소유권 확보 ② 공사진척률 10% 이상 ③ 이행보증서 제출

이는 초기 보상비와 기반시설 비용이 큰 산업 개발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민간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 ② 산업단지 개발이익의 재투자 의무 완화

산업 개발 사업이나 노후 산업 재생사업에서 공급되는 상업용지 등의 매각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50% 이상”을 산업에 다시 투자\*하도록 하는 재투자 비율도 “25% 이상”으로 절반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였다.

\* 산업시설용지의 용지가격 인하 또는 산업 내 기반시설 설치에 사용

또한, 사업시행자가 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분양수익을 “100%” 재투자하도록 하던 것을 “50% 이상”으로 완화한다.

산업단지는 원가로 공급하는 산업용지가 30~40%이상 차지하고, 상당부분 개발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사업성이 낮았으나, 이번에 재투자율을 낮춤으로써 산업 개발사업과 노후 산업단지의 재생사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개발이익 재투자 관련 다른 개발사업 사례 : ① 경제자유구역 개발이익 재투자: 25% ② 구조고도화사업 개발이익 재투자: 25%

#### ③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시 유치업종 배치 계획 생략 허용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유치업종의 배치계획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배치계획 없이 “업종별 공급면적”만으로도 계획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입주 기업이 원하는 위치가 업종 배치계획과 맞지 않는 경우 개발계획 변경 후 입주할 수 있어 최소 2~3개월가량 지연되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없어진다.

#### ④ 개별공장 정비를 위한 준산업단지 지정 가능 지역 확대

산단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입지한 공장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준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을 일부 확대한다.

\* 개별적으로 공장이 입지한 지역에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공장 시설개선 등을 위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재정비하는 제도 (정비계획 수립 시 건폐율 1.5배, 용적률 2배 인센티브 부여)

그동안 준산업단지는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50%이상 포함 시 생산관리지역 포함 가능)에 지정될 수 있어 도시 외곽에 보전관리지역이 혼재된 지역을 정비하기는 어려웠으나, 이번에 보전관리지역도 일부 포함(전체 준산단 면적의 10~20%\*)하여 준산단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준산단 면적이 10만㎡ 이하인 경우는 20%까지, 10만㎡ 초과인 경우는 10% 까지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령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자료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044)201-3677



##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 공식 출범”

▶ 건설기술용역업자 공제·보증·용자 서비스 제공

건설기술용역업자들의 보증사업과 공제사업, 자금용자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이 10일 공식 출범식을 개최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기존 건설감리협회(現 건설기술관리협회)가 내부적으로 운영했던 공제조합을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토록 정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이사장 김의복)의 설립을 인가(‘14.11.21)하였다.

설립인가를 받은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은 법인설립 등기 및 사업자등록 등의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고, 오는 10일 오후 5시 30분 서울 양재동 소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조합원, 국회의원 및 국토교통부 등 정·관계 인사, 유관단체장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하는 조합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된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합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입찰·계약·선급금 지급 및 하자보수 등의 보증사업과 손해배상책임 보장 및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 보상 등의 공제사업을 주요업무로 한다.

그밖에 조합원의 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용자와 건설기술의 개선·향상과 관련된 연구 및 교육사업, 조합원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및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의 업무도 수행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별도 법인으로 설립된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의 보증사업과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건설사업관리 관련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 기준」을 제정('14.11.21)한 바 있다.

감독 기준에 따라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의 회계 상황 및 재무건전성 유지 여부,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지도·감독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별도법인으로 공식 출범하는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이 우리나라 건설기술용역업계의 든든한 보호자 이면서 더 나아가 건설기술용역 발전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자료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044)201-3581



## 국토부, 싱크홀 예방을 위한 지반침하 예방대책 발표

▶ 2017년까지 지하공간 통합지도 서비스, 2015년 특별법 제정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기반으로 지하공간의 통합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지반침하 예방대책”을 국가정책조정회의(총리 주재, 서울청사, 15시)를 통해 발표하였다.

국토부는 지난 여름 연쇄적으로 발생한 싱크홀 사고를 계기로, 8.12부터 ‘범정부 민관합동 특별팀(T/F)’을 구성하여 싱크홀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왔다.

우선, 범정부 민관합동 특별팀이 국내의 지반침하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지반침하는 지하매설물 파손이나, 굴착공사 등 인위적요인으로 주로 발생하며,

지하매설물의 파손이나 매설불량에 따른 싱크홀이 가장 흔하지만 매설물의 깊이가 평균 1.2m 수준으로 낮기 때문에 규모가 대부분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지하매설물 평균깊이(m) : 상하수도 1.2, 통신 0.7, 전력 1.5, 가스 1.0, 난방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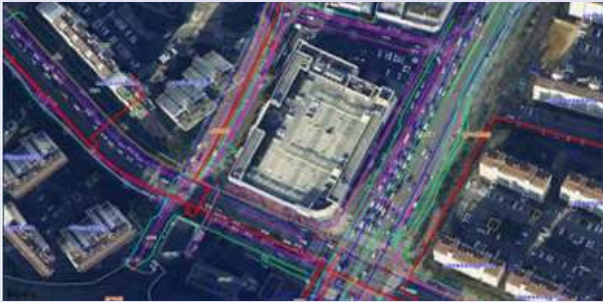
다만, 송파, 인천 등에서 발생한 지반침하는 지반을 고려하지 않은 부실시공으로 발생한 사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며, 증가하는 지하개발과 지하시설의 노후화를 감안할 때 지하공간의 안전에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지반침하 안전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서비스

보이지 않는 지하공간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구축할 계획으로, 관련 부처가 관리중인 지하공간 정보를 3D로 통합하여 지자체와 개발주체에게 제공\*할 예정으로 '17년까지 통합을 완료할 예정이다.

\* 공개가 곤란한 정보는 가공하여 제한적으로 제공



《 2D 지도 》



《 3D 지도 》

통합지도의 신속한 구축과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위해 '15년까지 정보의 취합, 제공 등 통합지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법제화하는 한편, 통합지도의 활용을 지원하는 센터 운영도 병행할 계획이다.

② 굴착공사 현장 주변의 안전관리를 강화

지하공간을 개발하기 전에 인근 지반과 시설물의 안전성을 분석하는 “지하개발 사전안전성 분석”을 특별법 제정을 통해 도입한다.

시공대상 시설물의 안전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각종 설계·시공기준을 공사현장 주변의 안전까지 고려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굴착공사 과정에서 외부전문가가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안전관리 시스템을 보완하고, 불시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도·감독도 강화한다.

③ 불안요소에 대한 선제적 모니터링 및 관리  
지반침하가 잦은 취약지역의 안전관리를 위해

지자체 별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도록 지자체의 역할을 특별법에 규정하고,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시설 안전공단에 지반탐사반 설치, 안전점검 매뉴얼 배포, 생활 속 싱크홀 징후의 발굴·홍보 등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에 균일한 지하수 관측망을 구축하여 지하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취약한 상하수관의 보수보강도 적극 추진한다.

④ 지하공간 통합 안전관리체계의 기반 조성

안전대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지하공간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가칭)「지하공간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내년 중 제정하고, 지반안전 관련 R&D도 적극 발굴·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통합지도 구축이나 특별법 제정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기존 정보와 현행 법령을 활용하여 실행 가능한 대책은 '15년에 즉시 이행할 계획이다.

우선 통합지도가 구축되기 전이라도 지하정보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수요자가 지하공간 정보를 쉽게 이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새로운 사전안전성 분석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건설기술 진흥법의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을 활용하여 굴착공사 시 지반안전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도록 하고, \*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계획으로 10m 이상 굴착 시 의무적으로 수립**

설계·시공기준이 개선되기 전이라도 설계단계에서 지반침하 가능성과 대책을 검토하도록 설계자의 의무를 확대\*할 계획이다.

\* **건설공사 설계도면 작성기준(국토부 고시) 개정('15)**

또한, 서울시 등의 싱크홀 사례를 타 지자체에 전파하고, 지반탐사반을 즉시 설치하여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 자료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044)201-3574





## 16일 냉정~부산 3개 구간 고속도로 개통

▶ 통행시간 30분 단축...부산, 김해, 양산 상습정체 해소 전망

▶ 김해에서 양산으로 출퇴근 하는 직장인 하모씨는 출퇴근 시간마다 막히는 고속도로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 때문에 출근은 일찍, 퇴근은 늦게 하는 습관이 생겼다.

마산에서 부산신항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권모씨는 운송시간을 맞추기 위해 끼니를 거르는 경우가 잦다. 부산신항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언제 막힐지 모르기 때문이다.

▶ 매번 막히는 고속도로 인줄 알지만 마땅히 돌아갈 다른 길도 없기 때문에 답답하기만 하다.

냉정~부산간 3개 고속도로가 확장·신설되어 만성적인 정체현상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2월 16일부터 남해선 서김해나들목~대저분기점, 남해2지선 서부산영업소~서부산나들목(확장) 구간과 중앙 지선 김해분기점~대동분기점(신설) 등 3개 구간을 개통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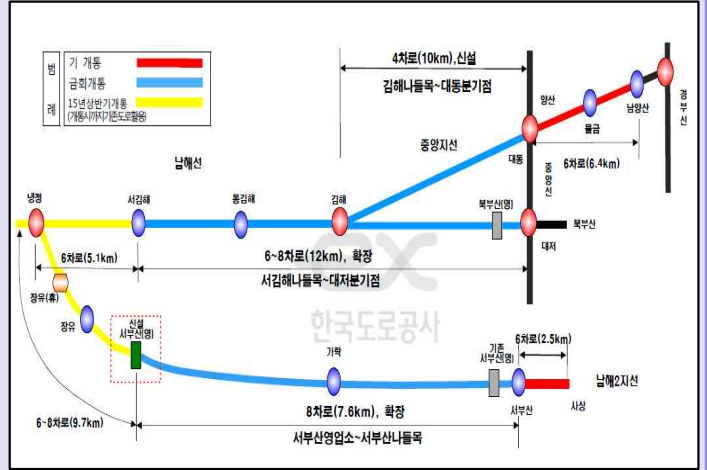
【김해 - 부산 - 양산】 : 서김해~대저(확장), 김해~대동(신설)

중앙고속도로 지선구간 신설로 김해에서 양산방향으로 이동 시 혼잡구간인 부산 도심지를 거치지 않아 이동거리가 5km 단축됨은 물론 통행시간이 출퇴근 시간 기준으로 약 30분 단축될 전망이다.

【김해 - 부산(신항만)】 : 서부산TG~서부산(확장)

교통정체 해소를 부산항(신항)으로 이동하는 물류수송이 원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컨테이너 등 대형화물차 통행 비중이 높은(30%) 본 구간 개통으로 화물차 통행시간은 10분 이상 단축될 것으로 전망되며, 연간 물류비용은 1,893억 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김해 나들목》



《중앙지선(확장)》



《중앙지선(신설)》



《남해 2지선 확장》

한편 도심부에 인접한 서부산 영업소를 부산시 외곽지역으로 이전하여 시가지 혼잡 완화가 기대되며, 특히 서부산나들목~사상구간은 지자체로 이관함으로써 지역여건에 적합하게 도로를 관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산·경남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2017년까지 부산외곽순환 고속도로를 추가로 개통하면, 창원, 부산, 울산을 연계하는 고속도로망이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자료 :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044)201-3881

## 광역·지방공사도 '토지보상 업무' 수탁 가능

▶ 보상전문기관 8개→21개로 늘어...보상기관 경쟁, 업무 효율화 기대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LH, 수공, 경기도시공사 등 8개 기관이 수행하는 보상업무 수탁을 앞으로는 광역 시·도가 설립한 13개 지방공사 등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12.16)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보상전문기관으로 LH, 수공, 도공, 농어촌공사, 감정원, SH, 경기·인천도시공사 등 8개 기관만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광역 시·도가 설립한 13개 지방도시공사나 개발공사도 보상전문기관으로 인정됨으로써 21개 기관으로 늘어나게 된다.

### 《 보상전문기관 》

현 행(8개)	개 정(21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감정원, SH공사, 인천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 신규 13개 추가 > : 부산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 광주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울산도시공사, 강원개발공사, 충북개발공사, 충남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경북개발공사, <b>경남개발공사</b>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등

보상전문기관으로 인정되면,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타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 또는 이주 대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보상전문기관 간 경쟁이 활성화됨으로써 보상 업무가 효율화 될 것”을 기대된다고 밝혔다.

■ 자료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044)201-3401



## 실적공사비 제도 전면 손질한다

### ▶ 실적공사비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설공사의 공사비를 결정하는 방법인 실적공사비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업계, 발주기관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12월 17일(수) 오후 2시, 건설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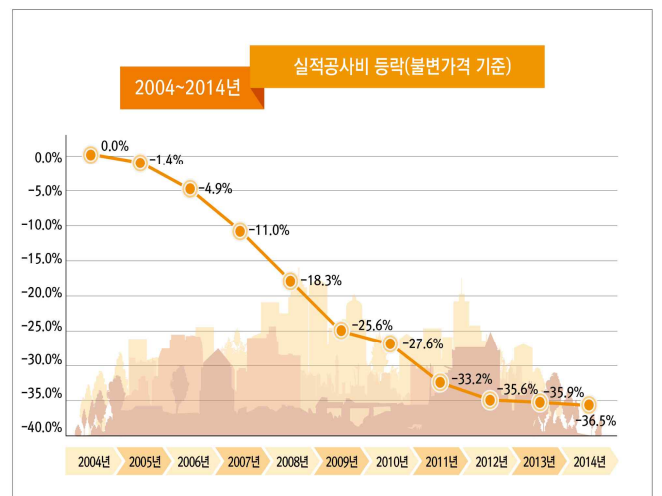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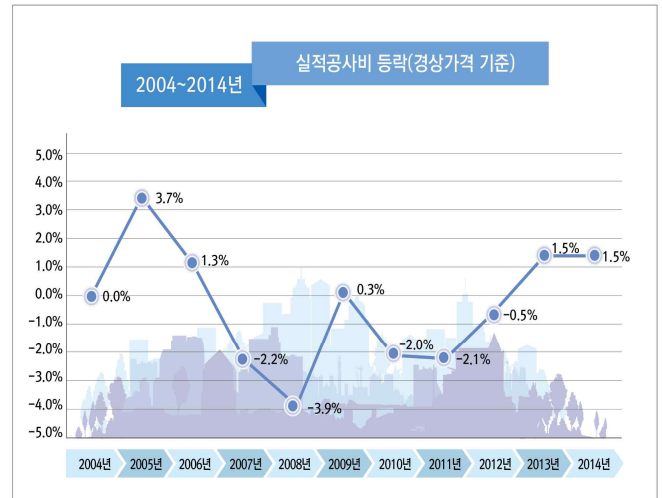
실적공사비 제도는 과거에 계약된 공사비 정보를 수집하여 향후 유사한 공사의 공사비 결정 시에 적용하는 제도로써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공사비 거품을 방지하고 공사비 산정과정을 효율화하기 위해 美·英·日 등 외국의 사례를 토대로 2004년도에 국내에 도입한 바 있다.

그러나, 건설업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저가낙찰이 누적됨에 따라 실적공사비가 지나치게 하락하는 등 우리나라 입찰문화의 특성으로 인해 제도가 정상적으로 자리 잡지 못하였다.

실적공사비 단가는 제도 도입 이후 10년간 1.5% 상승에 불과(불변가격 기준 36% 하락)하여 낮은 공사비로 인해 업계의 경영난 초래는 물론,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성 저하로 국민의 생명과 편의를 위협할 우려도 있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유사한 지수인 공사비지수는 동 기간에 56.1%↑ / 생산자물가지수는 24.2%↑

### < 참고: '04.~' 14년 간 실적공사비 등락 추이 >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는 금년 6월부터 정부합동 TF를 구성·운영하여 대한건설협회 등과 함께 제도 전면개편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금번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보완할 계획이다.

금번 개선(안)은 실적공사비 제도를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하는 “표준시장단가 제도”로 개편하여 이를 통해 기존의 실적공사비 단가를 현실화하고, 표준시장단가 제도가 정착되는 시기까지 3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실적공사비 적용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등의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국토부, 기재부, 행자부가 공동 주최하는 금번 공청회에는 국토부 여형구 차관을 포함하여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 김희국 의원 및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이 참석할 계획이며, 건설업계와 노동계 등 다양한 패널 및 방청객들이 함께 실적공사비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공청회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관련법령 등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료 :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044)201-3564



### 국토부,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 발표

- ▶ 설계 · 시공 상시 모니터링하고, 2회 적발시 영구 퇴출
- ▶ 모든 건축물 난연재료 사용 의무화 등 안전 사각지대 해소



《 14.2.17, 마우리리조트 체육관 붕괴(사망10명, 부상100여명) 》

※ “건축구조기준”은 습설을 고려하지 않았고,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기재된 제품에 미달되는 강재(SS400)를 사용하였으며, 건축주는 운동시설을 집회시설로 무단 용도변경



《 14.5.12, 아산 오피스텔 전도사고 》

※ 시공자는 설계도서상의 기초판의 넓이를 줄이고(약 30%) 파일개수도 누락(약40%) 하였으며, 관리자는 명백한 부실 시공을 지적하지 않음



《 14.5.26, 고양 종합티미널 화재(사망8명, 부상110여명) 》

※ 수선공사를 위해 방화셔터의 작동을 중지하였으며, 용접 공사 중 발생한 불꽃이 단열재에 착화하여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제도적인 관리수단 부재



《 14.5.28,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망21명, 부상8명) 》

※ 방화로 화재가 발생하였고, 2층 병원은 불에 잘 안 타는 난연재료 사용 대상 건축물이 아니어서 유독 가스가 발생하여 대형 인명 피해 발생



《 14. 10. 17,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사망16명, 부상11명)》

※ 환기구가 공중에 노출된 위치에 있었으나, 출입자단 시설이 미흡하였고, 환기구 덮개의 결집력 및 용접 시공이 부실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 14. 11. 15, 담양 펜션 화재사고(사망4명, 부상6명)》

※ 샌드위치패널, 석재 등으로 이루어진 무어가 건축물이어서 화재가 급격히 진행되었으며, 허가를 받았더라도 단층 건물이어서 난연재료 사용 대상 건축물이 아님

앞으로 부실 설계와 부실 시공 등 불법 행위를 하다 2회 적발되는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는 업계에서 퇴출되며, 국토부는 공사현장을 불시점검하여 불법행위를 감독하는 건축안전 모니터링 사업을 연중 실시한다.

또한,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안전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되고,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난연재료 기준 등은 규모와 용도에 관계없이 모든 건축물에 적용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아산 오피스텔 붕괴 사고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건축물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였으며, 7개월간 40차례의 전문가 검토를 거쳐 마련한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국가정책조정회의(총리 주재, 세종청사, 10시)에서 발표하였다.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첫째,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대폭 강화한다.

“1·2 Strike-Out”를 시행하여 불법 설계 또는 시공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건축관계자(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관계전문기술자)와 업체는 즉시 업계에서 퇴출되고, 건축안전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불법이 적발되는 업체와 건축관계자는 6개월간 업무가 정지되고, 2년간 2회 적발되면 영구적으로 업계에서 퇴출된다.

업무 정지 및 취소 내용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공개되어 일반 국민이 그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건축법 위반 처벌 대상자가 확대되고 벌금 수준도 상향된다. 처벌 대상자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건축주, 저질 자재를 공사 현장에 납품한 제조업자·유통업자 등으로 확대하고, 분양신고 위반 등 경제사범보다 낮은 현행 건축법의 벌금 수준을 대폭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건축물 분양신고 위반시 벌금은 3억원인 반면에 일반적 건축법 위반시 벌금은 1천만원 이하에 불과하므로 3억원 수준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크다.

건축주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고 부실설계를 하면 보험료가 상승되는 구조로 미국 등 선진외국에서 운영되는 건축관계자



배상책임보험 제도(PLI :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현행 건축설계 보험제도는 부실설계를 해도 용역비 한도 내에서 배상하고, 업계의 신뢰도와 무관하게 요율이 결정되어 실효성이 적기 때문이다.

#### ② 둘째, 불법행위 적발 체계를 강화한다.

각 지자체가 건축행정업무를 보조하는 “지역건축센터”를 설립하도록 추진한다. 지역건축센터는 허가관청의 전문성과 인력 부족으로 안전관리가 소홀해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재원으로 설립하며, 구조기술사, 건축사 등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구조도서를 검토하고 공사현장을 조사·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한편, 국토부는 공사현장을 불시에 점검하여 부실을 적발하는 “건축안전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실시한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감리자가 검토하기 어려운 샌드위치패널, 철강자재 등 기성제품의 품질, 구조안전 설계 등 전문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적발된 현장은 위법이 시정될 때까지 공사중단하고, 해당 업체는 2 Strike-Out을 적용하며, 법정도서가 누락되거나 미흡해도 건축허가한 공무원도 함께 적발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모니터링 건수는 '14년 250개에서 '15년 1,000개, '16년은 전체 허가건수의 1%인 2,000건으로 확대 추진한다.

#### ③ 셋째,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50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 초대형건축물(공동주택 제외)은 건축허가하기 전에 당해 건물과 인접대지의 구조안전

성능을 종합평가하는 “안전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초대형건축물의 경우 일반건축물의 건축기준으로는 안전검토가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실례로 제2롯데월드의 경우에는 시민안전단이 약 5개월간 안전영향평가를 사실상 수행한 것이나 다름없다.

국토부는 객관적이고 신속한 평가를 위해 안전영향평가 기관을 국책연구기관 중에서 선정할 계획이며, 허가관청은 건축주로부터 제출받은 평가도서를 평가기관에 송부하여 평가를 의뢰하게 된다.

건축심의를 받아야 하고, 유지관리 점검 대상이 되는 “다중이용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 범위 기준으로는 500명 이상 수용하였던 마우나리조트 체육관(1,205제곱미터) 등도 다중이용시설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대상 규모 기준을 5천제곱미터에서 1천제곱미터로 확대할 계획이다.

#### ④ 넷째, 안전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난연재료 사용 기준, 구조안전 기준 등은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에 관계없이 확대 적용하게 된다.

현행 기준으로는 금년에 사고가 발생하였던 장성 요양병원, 담양펜션 등은 난연재료 및 구조안전 확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앞으로는, 건축물에 사용하는 모든 샌드위치 패널은 난연성능을 확보하도록 하며, 구조안전확인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2층 이하 1천 제곱미터 이하 소규모 건축물도 구조안전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공사 현장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한다. “QR 코드(Quick Response Code)”를 시험성적서와 제품에

부착하여 현장에서 핸드폰 앱을 이용하여 건축자재 성능과 정품여부를 확인하고, 시공자는 철근 배근 및 철골 조립,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 공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야 하며, 감리자, 허가권자 및 건축주에게 촬영 파일을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신축하는 건축물뿐 아니라 준공된 건축물의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기존 건축물에 내진 보수·보강하는 경우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다중이용 건축물 등의 소유자는 내년에 국토부가 배포 예정인 ‘유지관리 매뉴얼’에 따라 건축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는 ‘건축물 유지관리자’를 지정하여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 소유자도 유지관리자가 될 수 있다.

유지관리자는 고양터미널 화재사고 사례와 같이 방화셔터를 작동 중단하고 수선 및 인테리어 공사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임대업자의 무단 용도변경 행위 등을 책임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최근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환기구, 광고물, 환기덕트, 공작물 등 건축물의 부속 구조물에 대한 설치 방법·위치, 유지관리 등에 관한 안전규정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안전대책이 사고 직후 단편적인 제도강화에 치중하였다면, 금번 대책은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되, 새로운 규제신설은 최소화하면서, 기존의 건축안전 제도가 설계, 시공, 유지관리 과정에서 반드시 준수되도록 하는 이행력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어느 대책보다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고, 추진과제별 세부 시행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고 설명하였다.

추진 과제 중 연구 용역이 필요한 건축관계자 배상책임보험(PLI), 안전영향평가 제도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추진과제는 내년 상반기 내에 입법예고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는 이후에도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 TF”를 상설화하여 불법 관행, 제도의 미비점 및 건축물 안전사고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자료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4082

## 국토부, 지자체 숨은 건축규제 발본색원한다

- ▶ 근거없는 숨은 규제 상시 모니터링 실시
- ▶ 금년 696건 폐지완료, 482건은 15년 3월까지 정비

(사례1) L건축사는 건축주로부터 상가주택 상층에 다락을 넣어달라는 설계의뢰를 받고 ○○구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다락설치를 제한하는 ○○구의 임의지침에 따라 다락 설치가 불가능하였고 건축주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어렵게 수주한 설계도 허탕치게 되었다.

(사례2) K건축사는 건축심의를 위해 필요 도서를 준비하여 신청 하였으나 □□시에서는 심의에 필요한 20여종의 설계도서를 제출 요구하는데 건축허가 전에 단순 사전규모 결정등을 위한 심의만 신청하는데, 구조, 전기 등 왜 이리 많은 도면이 필요한지 이해할 수가 없으며, 다시 설계도시 준비할 생각에 답답한 마음이다..

(사례3) P사는 △△시에서 업무시설을 건축하고자 공개공지(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 등)를 제공하고 건축법에 따라 20%범위에서 용적을 완화를 요청하였으나 △△시 조례에서는 법상 공개공지제 공 면적보다 초과 제공하여야 완화가 가능하다고 하여 울며 겨자 먹기로 추가로 소중한 재산을 제공하여야 할 형편이다.

앞으로, 건축법에 근거없이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숨은 건축규제와 임의 건축규제가 사라진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편의를 위해서 법령에 근거없이 운영중인 부적절한 지역 건축규제를 발굴하여 해소하는 모니터링 사업을 상시 실시한다.

실제로 일부 허가신청은 다락이 방으로 쓰일까봐, 공개공지에 울타리가 설치되어 사유화 될까봐 법에서 허용한 다락을 아예 불허

하거나, 용적을 인센티브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민원인 보다는 건축심의위원의 요구에 따라 법에서 규정한 심의도서 외에 추가로 건축허가단계에서는 불필요한 심의 도서를 요구하는 것이 관행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와 같은 지자체 숨은 건축규제를 직접 발굴하기 위하여 금년 4월부터 4차에 걸쳐 지역 건축사 간담회를 실시하고, 전국 172개 지자체 조례규정을 모두 검토하는 등 대대적으로 조사한 결과, 지자체 숨은 건축규제는 총 1,178건으로 확인되었다.

이중 시도 및 시군구에서 법령에 근거없이 임의로 운영하는 건축허가 지침이 53건,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이 53건이었으며 법령의 내용과 다르거나 위임근거를 벗어난 부적합 조례규정이 1,072건으로 파악되었다

임의 지침이나 심의기준은 대부분 건축과 개발수요가 많은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운영(85건, 81%)되고 있었으며, 법령 부적합 조례는 광역시에서 (867건 ,82%)에서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숨은 건축규제 1,178건중 696건은 폐지(정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482건은 내년 3월까지 완료될 계획이다

<건축규제 정비현황>

합계	임의 기준(107건)			부적합 조례(1,072건)		
	계	임의 지침(폐지)	심의 기준(정비 등)	계	위임 초과 등(폐지 등)	위임 미반영(정비 등)
1,178건	106건	53건	53건	1,072건	497건	575건
14년 완료	100건	52	48	596건	195	401
15년 초 정비	6건	1	5	476건	302	174

국토부, 지자체 숨은 건축규제 발굴 및 정비현황은 다음과 같다.

① 임의 지침 52건은 폐지, 1건은 '15년초 폐지된다.

○○시 등에서 운영중인 주택상부층 다락 설치 제한, 법령보다 강화된 부설주차장설치 지침, 조경의 50%이상을 옥상에 설치 토록 하는 등의 임의지침 53건을 폐지하였으며, 임의로 주택면적과 높이를 제한하는 □□구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내 주택건축 지침은 내년 초 폐지하기로 하였다.

구분	임의 지침 내용	법령 등 기준
주택 다락 지침	주택 상부층 다락설치 제한 또는 경사다락 최고높이 1.8m이하	경사 다락의 경우 가중한 평균 높이가 1.8m이하 가능
부설 주차장 지침	기계식 주차 불가(자주식 주차) 다가구 및 도시형 생활주택 등 세대당 0.7대 이상 주차장	기계식 주차 가능 세대당 0.5대 이상
조경 지침	조경면적의 50%이상을 옥상에 설치	옥상조경은 전체 조경면적의 50%를 넘을 수 없음
GB해제 지역 다중주택 지침	층고는 4m이하, 세대당 최소면적은 130㎡ 이상	층고 제한 규정이 없으며, 면적은 330㎡ 이하로 가능
오피스텔 지침	연면적 3천㎡이하 다른 용도와 복합시 별도 설치	오피스텔도 전용출입구 경우 적용 제외
녹색 건축 지침	모든 건축물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500㎡ 이상 건축물만 적용

② 과도한 건축 심의기준은 53건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일체 정비하기로 하였다.

국토부에서 “지방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심 의기준”을 제정하여 내년초 고시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250여개 허가관청별 건축심의 기준은 17개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통합(17개)하여 공개되어 형평성 있고 객관성 있게 건축심의가 진행되도록 하였고, 심의기준 재 개정시에는 지방의회와 협의하는 등 건축심의 기준 개정 절차가 강화된다.

앞으로 시·도에서 정비할 심의기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차장은 지하에만 설치하도록 하고, 아파트 길이도 제한(50m미만등)하는 등의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상 기준보다 과도한 기준은 담을 수 없고, 심의대상도 열거된 사항만 심의하도록 한다.

일부 위원의 주관적 심의를 없애기 위해 법령 위반이나 설계오류(설계도서 불일치등)등이 명백한 경우에만 재심의 하도록 하고 그 밖의 심의의견은 건축주가 판단하여 반영하도록 한다.

심의시 과도한 도서제출 방지를 위해 에너지계획서, 건축·소방 설비도, 상하수도계통도, 지질조사서 등의 도서는 제출하지 않고 . 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등만 제출하도록 하였다.

③ 법령 부적합 확인된 건축조례 1,072건중 596건은 정비되었으며, 476건은 내년 3월까지 정비하기로 하였다.

건축법에서는 주거, 상업지역에서 조경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녹지지역에서도 조경을 의무화 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한 조례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위임 근거도 없는 조례규정\* 497건중 195건은 폐지·정비하였으며 302건은 내년초 폐지될 예정이다.

\* 녹지지역 조경 의무, 건축사 현장조사 업무대행시 건축사업회 디자인 자문결과서 제출, 공개공지 면적 산정시 조경면적 불인정 및 인센티브 미제공

가설건축물중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되는 가설건축물 종류는 조례로 정하여야 하나, 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규정 575건중 401건은 조례 반영하였으며, 의회승인 등 개정 중인 174건은 내년에 정비될 예정이다.

\* 건축사 설계 제외 가설건축물, 정기(수시)점검 대상 건축물,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완화, 기존 건축물 특례(중개축, 용도변경), 사용검사 미실시 건축물 등



국토교통부는 이번 지자체 숨은 건축규제 준비를 통해 그간 건축인허가나 심의과정에서 나타났던 폐단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15년 정비하기로 한 규제에 대하여는 조속 정비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와 공조하여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신문고나 지방규제포털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국민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건축 행정 관행 실태를 조사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료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3761



##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마련

▶ 지자체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장기미집행 시설의 해제 절차에 착수

도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이 지나도록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이하 장기미집행 시설)의 해제가 촉진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자체가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현 시점에서 불합리하거나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들을 재검토하여 해제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시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지난 9월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장기 미조성 도로·공원 예정부지 활용 촉진”의 후속조치로, 지자체가 장기미집행 시설의 집행가능성을 물리적 요소, 재정적 요소 등을 감안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객관적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지 10년이 지난 장기 미집행 시설은 ‘13년말 기준으로 931km<sup>2</sup>, 서울면적의 약 1.54배로, 국토부는 이번 해제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장기미집행 시설을 해소한다면 토지이용의 비효율성과 국민의 재산권 제한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2020년 7월 1일 도래 예정인 장기미집행 시설의 대규모 실효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고 도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비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 시설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0년 동안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그 시설 결정은 실효(국토계획법 제48조제1항, 부칙 제16조제1항)

해제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자체는 2015년 12월 말까지 i)우선해제 시설의 분류, ii)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iii)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을 분류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2016년 1월부터 iv)관리방안을 포함하여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먼저 지자체는 장기미집행 시설 전체에 대한 현황조사를 통해 법적, 기술적, 환경적인 문제로 사업시행이 곤란한 장기미집행 시설을 우선해제시설로 분류하여 해제절차를 진행한다.

우선해제시설을 제외한 모든 미집행 중인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필요성과 재정수요의 추정 범위 내에서 투자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은 지자체의 중기 재정계획상 도시·군계획시설의 사업예산을 기초로 수립하고, 1단계(1~3년차), 2-1단계(4~5년차), 2-2단계(6년차 이후)로 구분한다.

지자체의 재정사업으로 집행할 수 없는 시설 중 민간투자사업과 도시·군계획사업과의 연계 등을 통해 비재정적인 방법으로 집행이 가능한 시설은 별도로 검토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다.

단계별 집행계획상 실효 전까지 사업이 시행될 수 없는 장기미집행 시설은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고, 해제되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별로 설치목적과 기능을 고려하여 그 시설의 해제에 따른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에도 불구하고 계획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제 지역을 중심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거나,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 허가 운영기준을 일부 조정하는 등 해당 지자체별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각 지자체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해제를 검토할 때 활용되며, 미집행 중인 시설에 대한 집행력 제고와 함께 향후 새로운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이 신중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자료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044)201-3720



## 신축 공동주택, 에너지 의무절감률 40%로 강화

▶ 내년 3월부터...2017년까지 60%로 단계적 상향

내년 3월부터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현 30세대 이상)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이 전용면적 60㎡ 초과인 경우 현행 30%에서 40%로, 60㎡ 이하인 경우 현행 25%에서 30%로 높아진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에너지 의무절감률 상향 조정(25~30% → 30~40%)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고시)을 개정·공포하고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

이는 '17년 목표 에너지 절감률 60% 이전에, 중간단계 목표로 40%를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1월 행정예고('14.11.4~11.24.)된 바 있다.

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친환경 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 강화

전용면적 60㎡ 초과인 경우 40% 이상(현 30%),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 30% 이상(현 25%)으로 에너지절감 설계기준\*이 강화된다.

### \* 즉벽, 창호 및 벽체단열 예시조건 강화

또한, 창호 기밀성능도 1등급 이상으로 강화했다. 다만, 과도한 제약조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시스템 창호로 설계한 경우는 제외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의 보일러 효율 계산방식 변경에 따라, 동일한 보일러의 효율이 상승된 것을 반영하여 1등급 컨덴싱보일러의 수준인 91%로 상향조정했다.

에너지 의무절감률 상향을 위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새로운 설계기준\*도 마련했다.

\* **최상층 지붕, 최하층 바닥 및 발코니외측장호 단열, 창면적비 예시조건 추가**

② 에너지절감률 평가항목 및 방법 개선

에너지절감을 위해 효율적인 향(向)배치, 기밀성능 향상 등의 항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일사량, 기밀성능 등을 평가항목에 추가하고, 추가된 평가항목을 “친환경주택 성능 평가 소프트웨어”에 반영, 일사량 및 기밀성능에 따른 부하 절감량 계산이 가능토록 했다.

③ 기타 미비점 보완 등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개정으로 변경되거나 삭제된 축벽과 신규 설계기준인 창면적비의 정의도 추가하였다.

적용 대상을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현 30세대)으로 변경하여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 규모 변동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였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에너지 효율등급이 10등급으로 변경됨\*을 반영하여 강화된 에너지 절감률에 상응\*\*하도록 조정하였다.

\* 3등급제(1, 2, 3등급) → 10등급제(1+++ , 1++ , 1+ , 1, 2, 3, 4, 5, 6, 7 등급)

\*\* 60㎡ 초과 : 1등급 이상, 60㎡ 이하 : 3등급 이상

이번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고시) 개정안은 `14.12.30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15.3.31부터 시행되며, 그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자료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5



## 해안, 도서지역도 GPS를 이용하여 땅 높이를 쉽게 측량 가능

▶ 육지, 해안, 도서지역을 통합한 국가 지오이드 모델 구축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최병남)은 해안·도서지역 등에서도 GPS를 이용하여 빠르고 쉽게 땅 높이를 측량할 수 있도록 국가 지오이드 모델\*을 해안까지 확장 제작하였다고 밝혔다.

\* (지오이드 모델) 지구상에서 높이(해발고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평균 해수면과 GPS 높이의 기준이 되는 타원체고의 차이를 연속적으로 구축한 것

이에 따라, 육상지역 뿐 아니라 해양, 도서 지역에서 실시하는 각종 건설·토목 공사, 지도 제작 등에서도 기존 측량방법 보다 빠르고 쉽게 높이측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높이측량은 전문기기(레벨)를 이용하여 해당 구간을 직접 도보로 이동하면서 관측해야 했으며, 장거리 측량구간에서는 이동거리가 증가할수록 많은 측량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우주 측지기술인 GPS 이용한 높이측량 기술 개발 및 기반인프라 마련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간, 전국에 일정하게 설치되어 있는 국가 기준점(삼각점, 수준점)에 대하여 중력량을 측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4cm급의 정확도를 갖는 국가 지오이드 모델을 제작 및 실적용을 위한 지속적인 테스트를 실시하여 왔다.

금년에는 해안지역이나 도서지역까지도 GPS를 이용한 높이측량이 가능하도록, 해양수산부(국립해양조원)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연안이나 해양의 중력량을 국가지오이드 모델에 도입하여 육상 뿐 아니라, 전국토에 대하여 신속한 높이 측량이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GPS를 이용한 높이측량을 실시할 경우 20km 이상 중·장거리 구간에 대해서는 기존 측량방법에 비해서 3일정도 측량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산악지 및 급경사 지역이나 육지~도서 간 높이 측량 등 기존 방법으로 정확한 높이 값을 구하기 힘든 지역에서도 직접 수준측량과 유사한 정확도로 빠르게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인 적용이 가능토록 2015년에는 공공측량 제도 등 관련 제도 개선과 표준품셈을 마련하고, 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PS를 이용한 높이측량과 관련된 자료들은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http://www.ngii.go.kr/geoid>)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자료 :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측량과  
(031)210-2652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 입법예고일 : 2014. 12. 10.(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537호)
- 예고기간 : 2014. 12. 10. ~ 2014. 12. 20.

#### □ 개정이유

도시·군계획시설을 융·복합 다기능 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시·군계획시설 내 설치 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확대하고, 부대·편익시설의 계획적 설치를 유도하기 위한 부대·편익시설의 설치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가. 도시·군계획시설에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 확대(안 제33조제2항제2호, 제58조제2항제6호, 제64조제2항제2호, 제84조제1항, 제90조제1항, 제93조제2항, 제95조제2항, 제98조제1항, 제101조제2항, 제104조제1항, 제106조제2항, 제109조제1항, 제111조제1항, 제114조제1항 등)
  - 1) 도시·군계획시설에 설치 할 수 있는 편익시설의 용도를 제한하여 이용자 편의 증진 및 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편익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웠음
  - 2) 자동차정류장, 유원지, 유통업무설비, 시장 등 다양한 편익시설의 복합 설치가 용이한 14개 도시·군계획시설에 문화 및 집회시설, 사회복지시설, 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편익시설로 설치 할 수 있도록 허용함
  - 3) 도시·군계획시설에 다양한 편익시설을 설치 할 수 있게 되어 이용자 편의가 증진되고, 시설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나.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설치기준 등 마련(안 제6조의2, 제45조제1항제1호, 제64조제2항, 제152조제6호)
  - 1)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개념을 정의하여 실시계획인가 등 관계 인·허가 시 혼란을 방지
  - 2)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은 주시설 면적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편익시설은 용도지역·지구에 따른 행위제한에 적합하도록 하는 등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설치기준을 마련
  - 3) 다방, 식당 등 시대여건에 맞지 않거나 의미가 불명확한 부대·편익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용도로 가급적 조정

## □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참조 : 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710, FAX 044)201-5569,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끝.

■ 자료 : 국토교통부

## 「건설공사 시공 및 종합평가 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 입법예고일 : 2014. 12. 12.(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575호)

□ 예고기간 : 2014. 12. 12. ~ 2014. 12. 22.

□ 개정이유

건설공사 시공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종합평가 지침을 마련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시공평가 지침」의 일부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지침의 명칭을 「건설공사 시공평가 지침」에서 「건설공사 시공 및 종합평가 지침」으로 개정.

나. 시공평가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총공사비에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도록 하고, 시공평가의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업무를 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13년 준공공사 기준으로 지자체의 시공평가 제출을 22%에 불과

다. 시공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는 외부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평가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안 제5조 내지 제7조)

라. 평가절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건설공사의 시공자가 평가자료를 작성하고, 감독자 또는 감리자가 이를 검토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8조)

마. 건설공사의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발주청이 평가표와 평가기준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평가위원의 청렴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금품 및 향응을 받은 경우에는 해촉하도록 하고, 건설업자에게는 평가점수를 감점(10점)하도록 함(안 제10조)

사.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이의제기 기회를 부여하고, 평가결과(점수, 평가사유, 감점내역 등)를 해당 건설업자에게 공개하도록 함.(안 제11조)

아. 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 2개 등급으로 평가하던 것을 4개 등급으로 평가하고, 공사특성(시특법 대상구조물) 및 난이도에 따라 가점 부여(최대 1.5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2)

자. 종합평가의 평가대상, 평가방법 및 절차, 우수업체 지정방법 등종합평가 세부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2조~제16조)

○ 시공평가를 실시한 건설공사를 종합평가 대상으로 하고, 시공평가 결과와 하자, 하도급거래위반, 기술개발투자 실적을 평가

○ 필요한 경우, 건설업자가 종합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평가 결과를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체 평가대상자의 20%이내에서 우수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 의견제출

이 건설공사 시공 및 종합평가 지침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로 2014년 12월 2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우편번호 339-012)

☎ 044-201-3580, 3579, Fax 044-201-5553

■ 자료 : 국토교통부



##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고시(안) 행정예고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입법예고일 : 2014. 12. 19.(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호)

□ 예고기간 : 2014. 12. 19. ~ 2015. 1. 9.

□ 개정이유

가. 건축허가 등 건축관련 인허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각 지자체별 상이한 심의기준의 표준화로 심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대

※ 심의대상 입의 확대, 법령보다 과도한 기준, 과도한 도서제출 및 재심의 요구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등 대표적 건축규제로 인식

나.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9.3) 현장건의 과제 이행

□ 주요내용

가. 심의기준의 법적 적합성 확보, 심의기준 통합운영 및 재개정 절차 강화 등 건축심의의 투명성 및 객관성 확대

나. 심의 제출도서 간소화 및 심의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국민의 사회·경제적 비용 감소 및 편익 증대

다. 2014. 11. 11 건축법령 개정에 따라 위원회 심의도서, 절차 및 방법은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고시 근거 신설

□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과
- 전화(☎) 044-201-3765/ 팩스 : 044-201-5574

■ 자료 : 국토교통부

## 조립식 판넬에 T형·H형 프레임을 적용한 외부보강형 물탱크 조립기술

### 1. 신기술개발자

법 인 명	(주)엔아이씨이
	(주)신한종합건축사사무소

### 2. 신기술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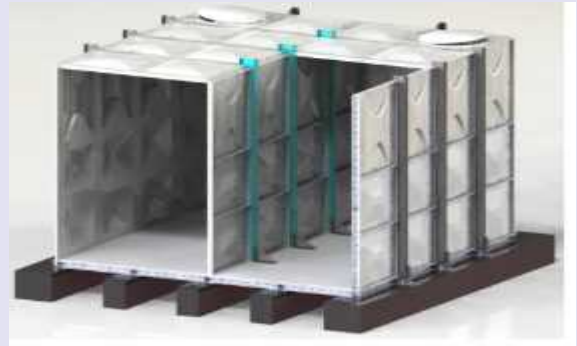
- 지정번호 : 제746호
- 보호기간 : 2014.11.10.~2019.11.09
- 기술분류 : 기계설비/건설기계/건축기계설비
- 내용요약

수돗물이 취수장에서 가정까지 오기 위해서는 정수장 이외에 대량의 수돗물 저장이 가능한 물탱크가 필요하여 대부분 조립식 판넬 물탱크를 사용하고 있다. 조립식 판넬 물탱크는 수압으로 인해 판넬 사이가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속성 내부보강재를 사용하는데 이는 녹과 부식을 일으켜 식수가 오염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물탱크 내부에 보강재를 사용하지 않고, 외부보강 T프레임과 내부칸막이 H프레임을 사용하여 외부에서 물탱크를 보강하는 외부보강형 물탱크 조립기술을 신기술로 개발하였다.

T프레임은 외벽에 전달되는 수압을 지지하고, 내부칸막이 H프레임은 칸막이부의 수압을 지지하도록 물탱크용 판넬과 합성하여 조립한다.

외부보강형 물탱크 조립기술로, 내부보강 방식으로 인한 수질악화 및 청소, 유지관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내부보강 및 용접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여 10~20% 공사비 절감이 가능하게 되었다.



《외부보강형 물탱크》



《외부보강용 T프레임(좌)과 내부칸막이 H프레임(우)》



《내부보강(기존기술) 물탱크 내부》



《외부보강(신기술) 물탱크 내부》

세계 물탱크 수출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외부보강형 물탱크를 보급하고 있으나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해, 구조안정성과 내진안전성을 확보한 신기술의 물탱크가 향후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조립식 외부보강 T프레임과 칸막이보강 H프레임을 조립식 물탱크용 판넬과 결합시켜, 외벽과 칸막이의 수압에 저항하는 외부보강형 물탱크 조립 공법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https://www.kaia.re.kr/>)건설신기술정보마당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씨엠디쏘일을 이용한 지반개량 심층혼합처리공법

### 1. 신기술개발자

법 인 명	(주)대웅
	(주)씨엠디 기술단
	(주)한국항만기술단
	초석건설산업(주)
	대호산업개발(주)

### 2. 신기술의 개요

- 지정번호 : 제747호
- 보호기간 : 2014.11.14.~2019.11.13
- 기술분류 : 토목/토질및기초/지반개량및보강
- 내용요약

심층혼합처리공법은 연약지반에 시멘트와 물을 혼합한 주입재를 주입하고 시멘트를 고화시켜 견고한 지반으로 개량하는 기술이다.

그러나 심층혼합처리공법으로 사용하는 시멘트는 강알칼리성 성분으로 토양을 오염시키는 문제가 있어 시멘트 대신 산업부산물을 활용하여 친환경적인 지반주입재를 사용하는 신기술을 개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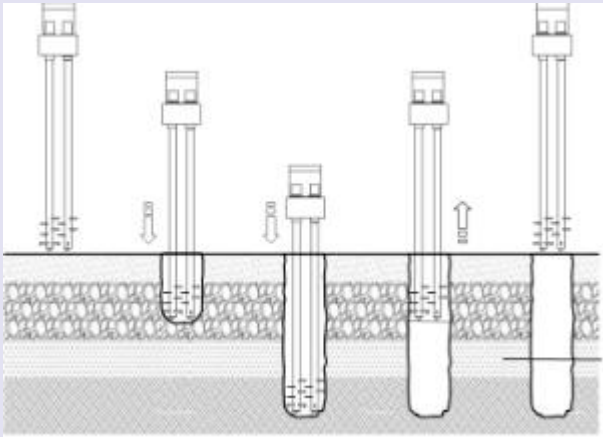
친환경 주입재는 보일러 연료의 연소공정에서 발생하는 페트로코크스 탈황석고와 열병합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플라이애시,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고로슬래그 등의 순환자원을 이용하여 개발되었다.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동등이상의 강도가 발현되었으며 시공후 수질시험에서도 허용 기준을 만족하여 녹색기술로 인증을 받았다.

또한, 이 신기술은 관입장비의 회전속도와 회전방향 조절이 가능하도록 개량하여 지중 개량체가 한방향으로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였고, 실시간 자동기록지를 통해 회전속도를 포함한 시공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시공품질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심층혼합처리장비》



《회전속도 조절로 개량체 수직도 유지》

최근 초고층 건물의 확대와 구조물의 대형화에 따라 견고한 기초지반이 요구되며,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연약지반의 분포가 많아 지지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반개량이 필요하므로 친환경적이고 고품질의 지중 개량체를 시공할 수 있는 본 신기술의 활용이 기대된다.

○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페트로코크스 탈황석고, 고로슬래그 미분말 및 고칼슘플라이애쉬를 사용한 지반안정재를 주입하고, 심층혼합처리장비의 교반로드 회전 속도 및 회전방법, 안정재 분사방식을 변경하여 지중 개량체를 시공할 수 있는 심층혼합처리공법.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https://www.kaia.re.kr/>)건설신기술정보마당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선단에 강관이 부착된 PHC파일용 이용한 매입말뚝의 선단지지력 증대 기술

### 1. 신기술개발자

법 인 명	(주)파일웍스
	롯데건설(주)
	동부건설(주)
	한신공영(주)

### 2. 신기술의 개요

- 지정번호 : 제748호
- 보호기간 : 2014.11.18.~2019.11.17
- 기술분류 : 토목/토질및기초/말뚝(Pile)
- 내용요약

건축물을 지지하기 위해서 말뚝을 지반에 박아 기초공사를 하게 되는데, 도심지에 주로 사용하는 매입말뚝은 지반 천공시 생기는 파쇄된 흙부스러기(슬라임)에 의해 하부지반이 원지반보다 느슨해져 지지력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HC파일의 선단에 짧은 길이의 강관을 부착하여 매입말뚝의 선단지지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하였다.

이 강관은 두께가 PHC파일의 5~10%에 불과하여 관입시 저항이 매우 작게 되므로 동일한 힘으로 보다 깊고 단단한 지지층에 관입이 가능하게 된다.



《PHC파일 시공》





《강관 부착 PHC파일》

매입말뚝의 지지력 향상으로 매입말뚝 시공 본수가 감소되어 공사비가 10~25% 절감되고 공사기간은 20~40%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

지지력의 향상과 공사비 절감 및 공사기간 단축 효과로 토목, 건축, 플랜트를 포함한 모든 분야의 기초공사시 본 신기술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선단에 짧은 길이(파일 직경의 0.8~1.0배)의 강관을 부착한 PHC파일을 시멘트밀크가 주입된 굴착공에 삽입하고 경타를 가해 파일에 부착된 선단강관이 천공과정에서 굴착공 저면에 형성된 슬라임과 그 하부의 이완된 지지층을 관통해서 교란되지 않은 원지반 지지층에 관입되도록 함으로써 매입말뚝의 선단 지지력을 증대시키는 공법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https://www.kaia.re.kr/>)건설신기술정보마당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개폐형 웬스 모듈과 지주 간 연결 장치를 이용한 낙석방지책과 시공법

### 1. 신기술개발자

법 인 명	동양건설(주)
	(주)삼보기술단
	(주)삼우공간건축사사무소

### 2. 신기술의 개요

- 지정번호 : 제749호
- 보호기간 : 2014.11.18.~2019.11.18
- 기술분류 : 토목/도로/도로안전시설
- 내용요약

기존 낙석방지책은 낙석 및 토사의 붕괴 등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와이어로프 및 철망이 고정되어 있어서 잔재물의 제거가 어렵고, 보수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메탈라스를 약 59%로 줄여 충격흡수 능력을 약 30% 확장시키고, 수직 가변 브라켓을 웬스 지주에 고정시켜 원하는 방향으로 개폐가 가능한 낙석방지책을 신기술로 개발하였다.

낙석 및 토사가 발생한 부분만 개폐하여 퇴적물을 신속하게 제거할 수 있고, 기존 와이어로프 및 철망으로 된 낙석방지책에 손상이 있을 경우 신기술을 이용해 부분보수가



가능하다. 《개폐식 낙석방지책》



《수직가변 브라켓》

따라서 유지보수 비용이 기존기술보다 10~18% 절감되며 보수시간도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신기술은 곡선부 및 경사부 시공은 물론 기존 제품과 호환이 가능하여 앞으로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부분 인장된 메탈레스 개폐형 웬스 모듈과 지주 간 연결장치(수직가변 브라켓)를 이용한 낙석방 지책과 시공법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https://www.kaia.re.kr/>)건설신기술정보마당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상하 이동과 좌우 회전이 가능한 도로전광표지 지지구조물 기술

### 1. 신기술개발자

법 인 명	국민대학교산학협력단
-------	------------

### 2. 교통신기술의 개요

- 지정번호 : 제22호
- 보호기간 : 2014. 8.19.~2019. 8.18
- 기술분류 : 교통시설/도로/도로표지
- 내용요약

복잡한 도심지에 설치된 도로전광표지판은 점검이나 유지보수 작업시 통행하고 있는 한 개 차로를 막고 사다리차량을 이용하여 지상으로부터 약 6m 높이에 있는 표출면으로 작업자가 직접 올라가거나 점검 및 보수를 수행함에 따라 항상 안전사고 주의가 요구되고 여러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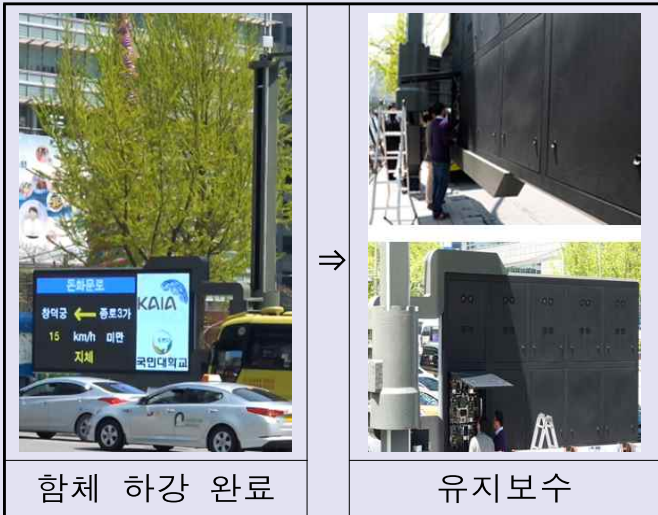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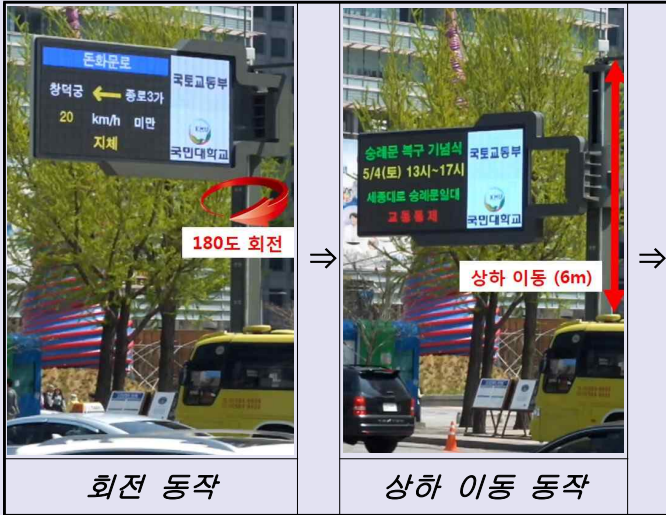
금번 지정된 이 기술은 상하/좌우 이동에 필요한 동력을 발생시키는 모터와 이를 전달해주는 체인과 톱니바퀴 모양의 휠, 그리고 기어, 나사모양의 스크류 등으로 구성되어 버튼으로 자동 작동되는 국내 최초 개발 기술이다.

표출면의 좌우 회전은 180°까지 가능하고 상하구동은 6m이며 지지구조물은 1.5톤까지 지탱이 가능하고 필요한 회전 각도와 높이 조정이 자유로우며 일정거리(5m)에서 리모컨 작동이 가능하여 작업자가 표출면의 상태를 보면서 동작이 가능하므로 만일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

도로전광표지 정기점검은 1년에 통상 4회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상에서 점검이 가능해짐에 따라 점검시간 단축과 점검방법이 간편해졌으며, 기존에 우려되었던 이물질 낙하로 인한 보행자 사고나 작업자의 낙하사고 등의

위험 발생을 막을 수 있고 도로차단에 의한 교통혼잡 예방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이 기술은 도로전광표지 이외에도 홍보물 등 도로시설에 적용이 가능하며, 높은 품질로 해외 수출 기회도 증대될 전망이다.



## 결로저감용 유연성 합성수지를 사용한 도로표지와 회전식 지주 제작 기술

### 1. 신기술개발자

법 인 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제이에스컴

### 2. 교통신기술의 개요

- 지정번호 : 제23호
- 보호기간 : 2014.10.24.~2019.10.17
- 기술분류 : 교통시설/도로/도로표지
- 내용요약

현재 도로표지판에 결로가 발생하면, 도로표지판이 얼룩지거나 검게 보이고 식별이 불가능하게 되어 표지의 야간 시인성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현상이 발생하며,

이는 도로표지의 근본 목적인 정보전달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 운전자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정보수집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교통소통과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사고발생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현행 지주는 도로표지판 A/S 시에 도로를 점유하고 작업을 하므로 교통체증 유발 및 교통사고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금번에 지정된 신기술인 "결로저감용 유연성 합성수지를 사용한 도로표지와 회전식 지주제작 기술"은 도로표지판의 바탕면 기초재료를 열전도율이 낮고 대기온도 순응력이 높은 유연성 합성수지 사용 및 반사지를 부착함으로써,

기존의 결로로 인한 표지판의 정보 전달력 저해문제, 결로 방지를 위한 전력비 발생 문제 및 자동차 전조 등의 빛을 산란시켜, 전조등의 빛이 운전자에게 돌아오지 못하는 재귀반사 불능 현상을 해결하였으며,



사진설명

온도(°C)	8.9
습도(%)	77
풍속(m/s)	0.5

- 일출시작(AM 5시30분)
- 습도상승
- 결로발생 최고점
  - 일반표지 : 결로 심함 (표지 가독 불능)
  - 결로저감용표지 : 약간 발생

지주의 하단부를 콘크리트 블록에 매립 설치하고, 블록본체에 매립된 양카볼트, 조임너트와 고정패드를 사용하여 지주를 고정 및 회전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주를 회전하여 안전지역에서 작업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A/S 시 차로 차단이 필요 없어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향상 시켰으며,

지주를 연결하기 위한 용접 보강판을 없애, 기존 지주보다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이고, 부식에 의한 전도사고의 위험성을 제거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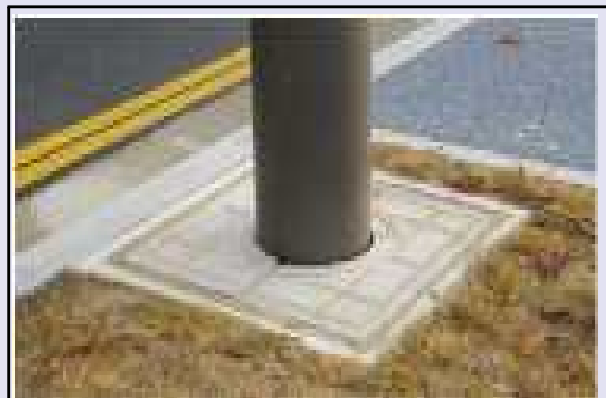
현행지주

- A/S시 차로차단 필요
- 수직/설치각도 조정기능 없음
- 보행자 발걸림 위험, 도시미관성 저하



단순 매립

- A/S시 차로차단 필요
- 수직/설치각도 조정기능 없음
- 지주보수 시 재시공 필요
- 매립부위 부식으로 전도우려



회전식 지주(신기술)

- 지주회전, 차로차단 필요 없음
- 간편한 수직/설치각도 조정
- 연결부위 부식발생 없음
- 보행자 안전, 도시미관성 제고



# 에어챔버 및 에어튜브 기술을 적용하여 충격흡수 및 상하 조절이 가능한 자동 블라드

## 1. 신기술개발자

법 인 명	동부엔지니어링(주)
-------	------------

## 2. 교통신기술의 개요

- 지정번호 : 제24호
- 보호기간 : 2014.12.04.~2017.12.03.
- 기술분류 : 교통시설/도로/도로표지
- 내용요약

주거지내 생활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로·교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로 보·차도 분리의 목적으로 횡단보도 주변에 고정형 블라드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기존 설치된 블라드의 경우 설치기준에 부적합하여 보행자가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고, 차량 충돌시 블라드 파손으로 유지관리가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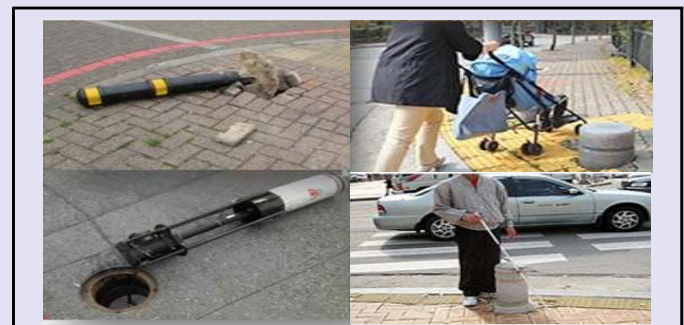
따라서, 보차공존도로내 보행자의 안전확보의 기능을 상실하여, 오히려 시각장애인, 휠체어 탑승자, 유모차, 자전거 이동시 불편을 초래하고 보행자와 충돌시 안전사고의 위험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금번 지정된 신기술인 "에어챔버 및 에어튜브 기술을 적용하여 충격흡수 및 상하 조절이 가능한 자동 블라드"는 교통정온화 구역 내 진입 차량의 속도를 저감시키고, 통과 교통량을 억제하여 인간중심·친환경성이 반영된 보차공존도로 조성이 가능한 국내 최초의 기술로서,

차량 감지를 통해 블라드가 상하 작동함으로써 진입차량의 속도저감 및 선별적 차량 통행이 가능하여 보행 안전성을 확보하고,

에어챔버 기술을 적용하여 시각장애인, 휠체어 탑승자 등 보행자가 블라드와 충돌시 충격을 흡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 및 운전자 부주의로 인해 충돌시에도 충격완화 및 전도가 가능하며,

또한, 블라드 상하작동 시 흔들림 방지 및 생활 방수를 위한 에어튜브 기술을 적용하였으며, 블라드를 손쉽게 분리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 블라드 파손 시 유지관리가 편리하며, 블라드 사용목적에 따라 재질, 기능이 다른 블라드를 교체하여 사용이 가능토록 하였다.



기존 기술

- 블라드 설치기준에 부적합
- 보행자 안전사고 유발
- 유지관리 어려움



지정 신기술

- 블라드 설치기준에 적합
-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
- 유지관리 편의성 제공



## 건설기술심의 현황

### 2014년 제13회 지방건설기술심의 개최 결과

- 건 명 :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안) 2건, 실시설계 적정성 3건,
- 심의일자 : 2014. 12. 23.(화)

의안 번호	안 건 명	발주청	심의결과
2014-13-01	대동~매리간 도로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PQ+SOQ)	경상남도 (도로과)	조건부
2014-13-02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1지구 조성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PQ)	진주시 (균형개발과)	조건부

의안 번호	요청사항	사 업 명	사 업 개 요	발주청	심의결과
2014-13-03	실시설계 (적정성)	무안~내이간 도로확포장공사	· 위 치 : 밀양시 무안면 신법리~부북면 제대리 · 사업내용 : 도로 L=7.24km, B=18.5m(왕복4차로) · 사 업 비 : 738억원 · 사업기간 : 2015 ~ 2019년(5년)	경상남도 (도로과)	조건부
2014-13-04	실시설계 (적정성)	고성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 위 치 : 고성군 고성읍 무량리~고성읍 죽계리 · 사업내용 : 하천 L=4.7km(축제 0.8km, 호안 3.9km) · 사 업 비 : 147억원 · 사업기간 : 2015 ~ 2017년(3년)	고성군 (안전총괄과)	조건부
2014-13-05	실시설계 (적정성)	통영 생활체육관 건립사업	· 위 치 : 통영시 평림동 452-1번지 일원 · 사업내용 : 건물 1개동(연면적 5,699㎡, 관람석 1,974석) · 사 업 비 : 148억원 · 사업기간 : 2015 ~ 2016년(2년)	통영시 (체육지원과)	조건부

■ 자료 : 도 건설지원과 기술심의담당  
(055)211-4626

## 계약심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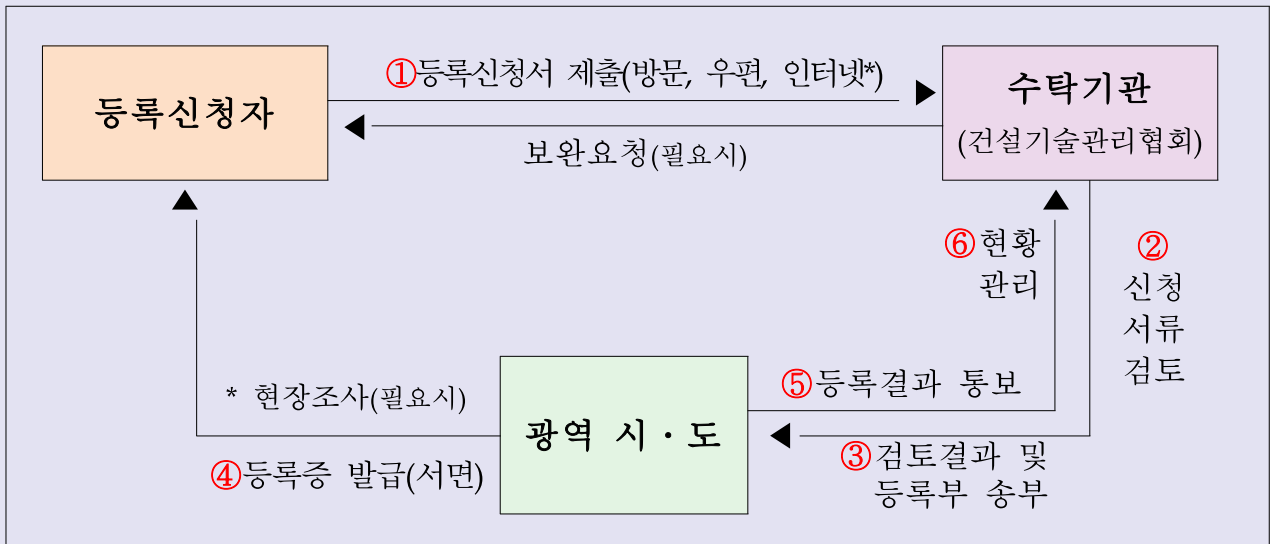
(단위:백만원)

기 간	분 야	건수	심사현황			비고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2014년 12월	<b>계</b>	<b>89</b>	<b>127,460</b>	<b>121,867</b>	<b>5,593</b>	<b>4.39%</b>	
	공사	토목	36	79,928	76,045	3,883	4.86%
		건축	13	30,242	29,359	883	2.92%
		기타	10	8,660	8,080	580	6.70%
	용역	7	5,599	5,426	173	3.09%	
물품	23	3,031	2,957	74	2.44%		

■ 자료 : 도 회계과 계약심사담당  
(055)211-3548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업무 처리요령 안내

- 2014. 5. 23.자로 「건설기술 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설계·감리·건설사업관리·품질검사 등의 업역이 건설기술용역업으로 단일화 되었으며, 이와 관련 등록 및 변경등록 등 민원의 접수·확인 및 관리에 대하여 우리 도에서는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를 위탁업무 수행기관으로 지정
- 현행 설계 등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 등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1년 이내(2015. 5. 22.까지) 변경 등록하여야 함.



- <① 단계> : 등록신청서 제출(신청인)
- <② 단계> : 신청서 접수, 고유 관리번호 부여, 서류 검토(관리협회)
- <③ 단계> : 등록서류 검토결과 통보(관리협회→해당 시·도)
- <④ 단계> : 등록증 발급(해당 시·도→신청인)
- <⑤ 단계> : 등록결과 통보(해당 시·도→관리협회)
- <⑥ 단계> : 등록결과 접수, 용역업자 등록번호 등재·관리(관리협회)

위 내용은 경상남도 홈페이지 <http://www.gsnd.net>(실국홈페이지) 및  
경상남도 건설정보 <http://gnci.gsnd.net>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재 신청 건설관련 자료 및 원고도 받습니다.

TEL : (055)211-4623~6

FAX : (055)211-4619

e-mail : rudgh123@korea.kr

이 자료는 업무 참고용입니다.